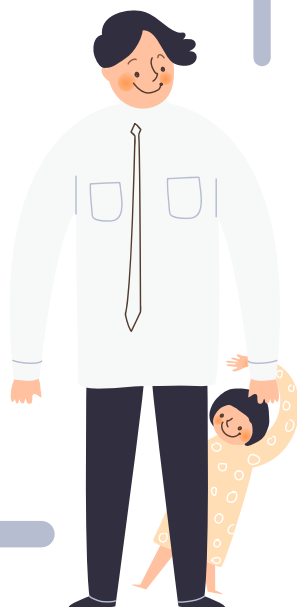




#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202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본 매뉴얼 제작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기획·운영한 2020년 하계 프로보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뉴얼의 질문 문항 정리와 지원서비스 및 지원기관 안내는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에서 진행해주셨습니다. 매뉴얼의 법률파트 작성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채은, 박성태, 박소정, 배송호, 양희원, 엄지은, 연미현 학생이 참여하였고, 공익법률센터의 소라미 임상교수, 이소은 임상교수, 윤지영 변호사가 지도·감수했습니다.



###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을 발간하며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최형숙

2005년 홀로 아이를 선택하고 출산과 양육을 시작하였고 긴 시간 나 홀로 양육은 어렵고 힘들다는 말로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물어볼 사람이라도 아니 아주 작은 정보라도 알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저의 아이는 16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주위에 도와 주시는 분들과 서로 의지하며 소통하는 같은 처지의 엄마들이 생겨났고 지원정보나 삶의 지혜는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률 정보는 찾기도 어렵고 정확한 정보를 찾거나 도움받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인트리가 함께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을 발간하게 된 것은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운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법’하면 어렵고 힘들고 뭔가 접근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앞서지만 홀로 양육하는 미혼엄마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상입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일들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도움으로 진행 할 수 있었고 진행하면서 서울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의 참여와 미혼모 당사자들의 참여로 더욱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회의와 휴먼라이브러리를 진행하면서 제 스스로도 정확하지 않은 법률 정보들을 상담을 통하여 전달하였고 법적인 부분도 예전과 다르게 바뀐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세상은 또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개인 개인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책이 발간될 때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프로보노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책자가 오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엄마들에게 힘이 되고 그렇게 힘을 얻어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 미혼모·부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장

김 주 영

금번에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와 더불어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명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낳고 기르는 용기있는 결단을 한 미혼모·부들은 부모를 함께 둔 가정을 전제로 만들어진 각종 법제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양육, 상속 등 주로 가족법상의 관계에서 미혼모·부가 직면하는 법률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매뉴얼이 필요하던 차에 이번에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이 발간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이번 법률매뉴얼의 발간은 서울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0년 하계 프로보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공익법률센터의 출범을 계기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예비법조인으로서의 공적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공익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학년 겨울방학 때는 학생들 전원이 여러 공익기관과 더불어 공익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익법무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때는 프로보노(자원봉사)활동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익적 교육 내지 실습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계 프로보노 프로그램 중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발간’ 프로젝트는 미혼모·부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미혼모·부 커뮤니티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적 문제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함으로써 법률서비스로부터 취약한 미혼모·부 당사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참여하는 로스쿨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혼모·부 당사자와의 소통 및 관련 법제도 리서치를 통하여 미혼모·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적·제도적 차별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어 특히 소중한 프로젝트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이번 매뉴얼이 현장에서의 필요를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인트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공익법률센터의 소라미 부센터장님을 비롯하여 지도와 감수에 참여해 주신 이소은 임상교수님, 윤지영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로스쿨생활 중에도 이번 프로그램에 자원하여 훌륭한 매뉴얼이 작성될 수 있도록 수고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노고도 치하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률 매뉴얼이 많이 활용되어 미혼모·부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그리고 활발한 피드백을 통해 더욱 충실한 매뉴얼로 계속 발전되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 CONTENTS

## I › 출생신고

### 01 미혼모가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 23

 **Tip** 출생신고될 권리

 **Tip** 출생신고 방법

 **양식1** 출생신고서

### 02 출생신고시 친부의 성을 따라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 24

 **양식2** 가족관계증명서

### 03 미혼부가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 25

 **Tip** 인지의 효력을 갖는 출생신고

 **양식3** 출생확인신청서

### 04 미혼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친모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주민번호 세 가지를 모두 몰라야 하나요? ..... 25

### 05 자녀를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출생신고를 하나요? ..... 26

06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 26

 **Tip**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입양 가능성

## II › 인지

01 친부가 갑자기 나타나 자녀를 자기 호적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 31

 **Tip** ‘호적’ 말고 ‘가족관계등록부’

 **양식1** 인지신고서(임의인지)

02 친부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며 친자관계를 부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1

 **양식2** 인지신고서(강제인지)

 **Tip** ‘인지’란

03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바뀌나요? ..... 32

04 인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32

 **Tip** 인지신고시 주의사항

# CONTENTS

|                                                                   |    |
|-------------------------------------------------------------------|----|
| 05 인지청구소송에서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때 유전자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33 |
|-------------------------------------------------------------------|----|



**Tip** 당사자 동의 없는 유전자 검사

|                                   |    |
|-----------------------------------|----|
| 06 친부의 인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34 |
|-----------------------------------|----|

|                                    |    |
|------------------------------------|----|
| 07 친부가 이미 사망했는데 인지를 할 수 있나요? ..... | 34 |
|------------------------------------|----|

|                                             |    |
|---------------------------------------------|----|
| 08 친부가 인지하면 친모가 키우고 있던 자녀를 데려갈 수 있나요? ..... | 35 |
|---------------------------------------------|----|

|                                                                           |    |
|---------------------------------------------------------------------------|----|
| 09 친부가 인지를 하더니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겠다고 합니다.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는 친모가 이를 거부할 수 없나요? ..... | 35 |
|---------------------------------------------------------------------------|----|

|                                                  |    |
|--------------------------------------------------|----|
| 10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면 자녀가 친부의 재산이나 빚을 상속 받게 되나요? ..... | 36 |
|--------------------------------------------------|----|

|                                                                          |    |
|--------------------------------------------------------------------------|----|
| 11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고 양육비를 부담해왔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친부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되나요? ..... | 36 |
|--------------------------------------------------------------------------|----|

### III> 자녀의 성과 본

- 01 친부가 인지를 하면, 친모의 성을 따르던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나요? ..... 41

 양식1 자녀의 성과 본 계속사용에 관한 협의서

- 02 친부가 인지를 하고 나서 자녀가 종전대로 친모의 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친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나요? ..... 41

 양식2 자녀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서

- 03 친부 인지 후, 친모가 법원에 친모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해서 그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대해 친부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42

- 04 친모가 자녀의 친부가 아닌 사람과 결혼했을 때, 자녀가 결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2

 Tip 자녀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청구 방법

 양식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Tip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신고방법

 양식4 성·본변경신고서

# CONTENTS

|                                                             |    |
|-------------------------------------------------------------|----|
| 05 친모가 자녀의 친부가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하면, 자녀가 결혼한 남편의 자녀로 등록 되나요? ..... | 44 |
|-------------------------------------------------------------|----|

 **Tip** 친양자입양의 요건

 **Tip** 친양자입양과 가족관계등록부

|                                                                   |    |
|-------------------------------------------------------------------|----|
| 06 자녀의 성과 본이 결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누가 친부로 기재되나요? ..... | 45 |
|-------------------------------------------------------------------|----|

|                                                                                               |    |
|-----------------------------------------------------------------------------------------------|----|
| 07 친모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후 자녀가 친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를 원합니다. 친부의 동의 없이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46 |
|-----------------------------------------------------------------------------------------------|----|

|                                                    |    |
|----------------------------------------------------|----|
| 08 자녀의 성과 본을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 46 |
|----------------------------------------------------|----|

 **Tip** 성과 본 변경허가 시 판단 기준

 **Tip** 성과 본 변경이 허가되지 않은 사례

 **Tip** 성과 본 변경이 허가된 사례

|                                                        |    |
|--------------------------------------------------------|----|
| 09 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 | 48 |
|--------------------------------------------------------|----|

## IV> 친권 · 양육권

### 01 ‘친권’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행사하는 것인가요? ..... 53

 **Tip** 인지와 친권

### 02 양육권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행사하는 것인가요? ..... 54

### 03 인지 과정에서 친모와 친부가 공동친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친권과 단독친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54

### 04 친부로부터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 다. 그런데 나중에 친부가 자녀를 키우겠다면서 법원에 양 육권자변경신청을 했습니다. 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 55

 **Tip**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 절차

 **양식1**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서

# CONTENTS

## 05 친부가 친권을 영원히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56

 **Tip** 법원이 친권상실을 인정한 사례

 **Tip** 친권상실심판 청구 절차

 **양식2** 친권상실심판청구서

## 06 일정한 기간 동안만 친부의 친권을 정지시킬 수 있나요? ..... 57

 **Tip** 친권의 일부 제한

## V > 면접교섭

## 01 자녀가 친부를 평생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 61

 **Tip** 면접교섭권 배제심판 청구절차

 **양식1** 면접교섭배제심판 청구서

## 02 자녀가 친부를 만나고 오면 울면서 친부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자녀를 친부와 만나게 해야 하나요? ..... 62

 **Tip**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한 사례

03 친부에게 면접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받았습  
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 63

04 친부가 면접교섭을 못한다면 양육비도 지급할 수 없다며 양  
육비를 빌미로 면접교섭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63

## VI 양육비청구

01 인지 이후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시작하려고 합니  
다. 양육비 청구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며, 1심 판결까지 걸  
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67

 양식1 양육비심판청구서

02 인지소송 없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67

03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인지청구를 하  
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68

04 자녀가 이제껏 친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러한 사실  
이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불리한 사실이 될까요? ..... 68

# CONTENTS

- 05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매월 받고 있는데, 양육비가 더 필요  
합니다. 양육비를 증액해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69

 양식2 양육비변경심판청구서

- 06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자녀를 양육해왔습니  
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거 양육비  
도 청구할 수 있나요? ..... 69

 Tip 과거양육비를 증명하는 방법

- 07 과거 양육비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경우, 과거에 양육비로 지  
출한 비용의 100%를 받을 수 있나요? ..... 70

- 08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곳인가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71

- 09 양육비이행관리원 외에도 양육비 청구를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 71

 Tip 양육비이행지원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10 친부가 아직 학생이라 소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양육비  
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72

 Tip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

 Tip 표준양육비 계산 사례

11 친부가 결혼하여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양육비 산정시  
그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양육비가 감액될 수 있나요? ..... 73

12 양육비 증액은 언제 가능한가요? 매번 법원을 통해서 증액  
을 청구해야만 하나요? ..... 74

13 친부가 양육비를 감액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나요? ..... 74

## VII 양육비이행확보제도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01 양육비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친부가 재산을 빼돌릴까  
봐 걱정입니다.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  
법이 있나요? ..... 79

 Tip 가압류란?

02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친부로부터 어떻게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 ..... 80

03 친부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  
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80

 양식1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

# CONTENTS

|                                                                               |    |
|-------------------------------------------------------------------------------|----|
| 04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급여를 받거나 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81 |
|-------------------------------------------------------------------------------|----|

 양식2 이행명령신청서

 양식3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 및 과태료 신청서

|                                                |    |
|------------------------------------------------|----|
| 05 친부가 양육비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 | 82 |
|------------------------------------------------|----|

|                                                               |    |
|---------------------------------------------------------------|----|
| 06 친부가 양육비도 안 주고 생계가 너무 어려운데,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82 |
|---------------------------------------------------------------|----|

 양식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5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연장신청서

 Tip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격요건

 Tip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VIII 상속

 Tip 용어설명(피상속인 등)

01 친부가 사망하면 미혼모의 자녀는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87

 **Tip**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02 친부에게 다른 자녀,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88

 **Tip** 상속순위

 **Tip** 사례로 알아보는 상속순위와 상속분

03 친부가 사망하였을 경우, 자녀가 친부의 채무를 떠안게 될 수도 있나요?..... 90

 **Tip**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의미

 **양식1**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양식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04 친모가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친모가 사망했을 때 그 보험금을 자녀가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91

05 친모가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나중에 친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를 인지한 친부가 자녀의 보호자로서 그 보험금을 받아갈 수도 있나요? ..... 92

 **Tip** 미성년후견인이란?

# CONTENTS

## IX ‹ 부록 I - 법률 양식

|                                   |     |
|-----------------------------------|-----|
| 1. 인지 .....                       | 97  |
| 2. 출생신고 .....                     | 99  |
| 3. 자녀의 성과 본 .....                 | 104 |
| 4. 친권 · 양육권 · 면접교섭권 · 양육비이행 ..... | 110 |
| 5. 상속 .....                       | 129 |

## X ‹ 부록 II - 미혼모·부 관련 지원 서비스

|                                                     |     |
|-----------------------------------------------------|-----|
| 1. 권역별 미혼모 · 부자 거점기관 사업<br>- 미혼모 · 부 초기 지원서비스 ..... | 137 |
|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및 지원 내용 .....                       | 139 |
| 3.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                           | 141 |
| 4. 미혼·한부모 상담 민간단체 .....                             | 143 |
| 5.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양육비이행관리원) .....                 | 144 |
| 6. 2020년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서비스 .....                       | 145 |

#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I〉

# 출생신고





# I 출생신고



\* 출생신고 파트의 질문 5, 6번은 미혼모와 미혼부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Q 1. 미혼모가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sup>1)</sup> 미혼모 단독으로 출생신고시 출생신고서의 친부란은 공란으로 두고, 자녀의 성은 친모의 성이나 친부의 성 중 친모가 선택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Tip | 출생신고될 권리란?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필수 예방접종, 건강보험, 아동수당, 초·중등 교육지원과 같이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불법적인 아동임양이나 아동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sup>2)</sup>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2) 대법원 2020.6.8.자 2020 스575 결정



### Tip | 출생신고방법

**신고장소**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고기간** 자녀 출생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1. 신분증(출생신고하는 친모 또는 친부)
2. 출생증명서(병원 발행)
3.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등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등초본
5. 지원금 받을 통장사본
6. 전기료 감면을 위한 전기료 고객명과 고객번호(국번없이 123으로 전화해서 확인 가능)

\* 아동수당은 출생신고를 마친 후 별도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한 날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양식1 출생신고서 > 99쪽 양식참고



## 2. 출생신고시 친부의 성을 따라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친부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친모는 자녀의 출생신고시 자녀의 성을 친부의 성과 본을 따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친부'란은 공란으로 기재됩니다.<sup>3)</sup>



### 양식2 가족관계증명서 > 102쪽 양식참고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 Q 3. 미혼부가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미혼부는 단독으로 인지의 효력을 갖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sup>4)</sup> 이 때 미혼부는 친모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미혼부가 친모의 이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확인을 받은 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sup>5)</sup>



#### Tip | 인지의 효력을 갖는 출생신고

친모는 출산과 동시에 자녀와의 사이에서 법적으로 모자관계를 인정받지만, 미혼부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인 부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부는 출생신고 전에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진행하면 여기에 인지신고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 양식3 출생확인신청서 > 103쪽 양식참고

### Q 4. 미혼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친모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주민번호 세 가지를 모두 몰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미혼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모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친모의 소재불명,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친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sup>6)</sup>

Q

## 5. 자녀를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출생신고를 하나요?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sup>7)</sup>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출생확인 신청서(양식3)<sup>8)</sup>’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유전자검사결과 기록지)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 6.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출생신고는 자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sup>9)</sup> 만약 친모나 친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1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sup>10)</sup> 출생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아동학대가 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친모가 3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도록 했던 사례에서 법원은 방임학대를 인정해 친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처벌 판결을 내렸습니다.<sup>11)</sup>

4) 인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매뉴얼의 31쪽을 참고해주세요.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2항

6)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8) 자세한 법률양식 내용은 본 매뉴얼의 103쪽을 참고해주세요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11) 인천지방법원 2016.6.9. 선고 2015고단6538 판결



### Tip |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입양 가능성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 중 입양으로 연계되는 사례는 매우 희박하고 대부분의 아동은 아동양육시설(소위 고아원)에서 장기간 생활하게 됩니다.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은 경찰과 관악구에 신고된 후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에 서울시 산하의 아동양육시설(소위 고아원)에 분산 배치되어 양육됩니다. 이 아동들이 입양과 연계되기 어려운 이유는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이 입양절차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입양기관은 자신의 기관으로 직접 입양 의뢰된 아동과 자기 기관을 찾아 온 예비입양부모를 우선적으로 결연하고 있습니다. 민간 입양기관을 찾은 예비양부모들이 특별히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을 매칭시켜 달라고 언급한 경우에만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과 입양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매년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200여명의 아동 중 입양으로 연계되는 아동의 숫자는 십 여명에 불과합니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독일, 체코 정부에게 베이비박스 운영이 아동 권리를 침해하므로 중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입지

자녀의 성과 분

친권 ·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보조제도 및  
양육비 양육비 집행원

상속

부록 I

부록 II

#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Ⅱ〉

# 인지





## II 인지



\* 인지파트의 질문2, 3, 4, 5, 6, 7, 8, 9, 10, 11 내용은 미혼모, 미혼부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질문과 답변 상 친모는 친부로, 친부는 친모로 바뀌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Q

**1. 친부가 갑자기 나타나 자녀를 자기 호적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합니다. 친부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면(임의인지) 친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부모자녀관계가 생겨 자녀와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각각 친부와 친자녀로 기재됩니다.



### Tip | '호적' 말고 '가족관계등록부'

2005. 3. 31. 개정 민법에 따라 호주제도가 폐지된 후 호적법이 폐지되었고, 2007. 5. 17. 이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이 등록·기재되고 있습니다.



**양식1** 인지신고서(임의인지) > 97쪽 양식참고

Q

**2. 친부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며 친자관계를 부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인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강제인지). 인지재판에서는 친부와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 ‘인지’란?**

‘인지’는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친모나 친부가 자신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지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친부’에 의한 인지입니다. 친모는 인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동시에 모자관계가 인정되지만, 친부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자녀와 법적 부모자녀 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지는 특히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친부와 자녀 사이에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인정되어야 친부로서 양육의무를 부담하므로,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인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니오, 판결문을 가지고 ‘인지신고’를 진행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나서 1개월 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신고를 하면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됩니다.



**4. 인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친부가 자발적으로 인지신고를 할 때에는 ‘인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친부 주소 소재지의 시·구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친부의 인지신고는 친모나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친모가 인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Tip | 인지신고시 주의사항

1. 친부가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부 본인이 직접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3자가 친부를 대리해서 인지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인지재판을 거쳐 친모가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신고서와 함께 ‘재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sup>12)</sup> 또한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sup>13)</sup>

## Q

### 5. 인지청구소송에서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때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회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수검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친부에게 ‘유전자 검사에 응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sup>14)</sup> 친부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면 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경찰서 구치소에 최대 30일 간 감치되는 ‘감치명령’을 받게 됩니다.<sup>15)</sup> 끝까지 유전자검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최근 법원은 ‘아무 이유도 없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점’이 오히려 친자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유전자 검사 없이 친자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sup>16)</sup>

12) 확정증명서는 판결 후 항소기간이 지나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는 재판을 진행한 법원에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14)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15)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16)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전자검사 이외에 다른 정황(친부와 친모가 나눴던 연락의 내용 등, 친자관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을 고려해 친자관계를 인정했지만, 일방적으로 유전자검사 없이 친자관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Tip | 당사자 동의 없는 유전자검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친자확인)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는 기본적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데, 제51조에서 유전자 검사 시에는 반드시 서명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up>17)</sup>



### 6. 친부의 인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친부가 스스로 인지를 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친부가 인지신고를 할 때 인지 받는 자녀 본인이나 친모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7. 친부가 이미 사망했는데 인지를 할 수 있나요?

친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인지 판결문을 받아 인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상대방인 친부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sup>18)</sup> 검사를 상대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은 반드시 '친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8조(벌칙)

18) 민법 제864조

## Q 8. 친부가 인지하면 친모가 키우고 있던 자녀를 데려갈 수 있나요?<sup>19)</sup>

친부는 언제든지 자녀에 대해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친모나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지를 했다고 해서 친부가 갑자기 친모와 살던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부가 인지를 한 후에는 친부와 친모는 자녀 양육권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권자를 결정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자녀가 살아온 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서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sup>20)</sup> 이때 미혼모가 홀로 자녀를 출산해서 장기간 양육을 맡아왔다면 법원의 판단에 유리한 정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Q 9. 친부가 인지를 하더니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겠다고 합니다.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는 친모가 이를 거부할 수 없나요?

인지한 친부에게는 자녀를 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는데 이것을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양육권자인 친모는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친부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친부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sup>21)</sup>

19) 친권·양육권 관련 내용은 본 매뉴얼의 53쪽부터를 참고하세요.

20) 민법 제837조

21)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관련 내용은 본 매뉴얼의 61쪽부터를 참고하세요.

Q

## 10.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면 자녀가 친부의 재산이나 빚을 상속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인지를 하면 친부와 자녀 사이에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면 당연히 상속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자녀는 사망한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친부가 빚을 남겼다면 자녀는 빚도 상속받습니다. 다만 친부에게 다른 자녀나 법률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sup>22)</sup>

Q

## 11.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고 양육비를 부담해왔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친부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되나요?

자녀 역시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가지게 되고, 친부에 대해서도 그러한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는 부양의무는 자녀 자신의 생활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모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생활을 최소한도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sup>23)</sup> 따라서 친부가 자녀에 대하여 부양료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를 하더라도 그러한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될 여지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자녀와 친부 사이의 과거의 관계, 친밀도, 친부가 생활이 곤궁하게 된 원인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게 되므로, 단지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녀가 친부를 전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2) 상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매뉴얼의 87쪽을 참고하세요.

23)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III〉

# 자녀의 성과 본





### III 자녀의 성과 본



\* 자녀의 성과 본 파트의 질문 8, 9 내용은 미혼모, 미혼부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질문과 답변 상 친모는 친부로, 친부는 친모로 바뀌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Q

1. 친부가 인지를 하면, 친모의 성을 따르던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나요?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면 자녀의 성은 친부의 성을 따라 변경됩니다.<sup>24)</sup> 하지만 친모와 친부가 사전에 협의하여 인지신고를 할 때 인지신고서에 ‘인지 전 자녀의 성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sup>25)</sup> 관련한 증명서류(예:합의서)를 첨부하면 자녀는 기존에 사용하던 친모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sup>26)</sup>



**양식1** 자녀의 성과 본 계속 사용에 관한 협의서 > 104쪽 양식참고

Q

2. 친부가 인지를 하고 나서 자녀가 종전대로 친모의 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친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종전대로 친모의 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친부와 친모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에 사용하던 성과 본, 즉 친모의 성과 본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sup>27)</sup> 이 경우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심판을 청구하고, 허가심판이 확정되면 성본 계속사용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신고 전까지는 인지신고의 효력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일단 친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됩니다.<sup>28)</sup>



**양식2** 자녀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서 > 105쪽 양식참고

Q

3. 친부 인지 후, 친모가 법원에 친모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해서 그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대해 친부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인지신고가 이루어져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심판청구를 하게 된 경우에, 법원이 종전의 성을 계속 사용하라고 허가 판결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sup>29)</sup> 따라서 친부가 다시 아이의 성과 본을 친부의 성과 본으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4. 친모가 자녀의 친부가 아닌 사람과 결혼 했을 때, 자녀가 결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과 본의 변경’ 제도<sup>30)</sup>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sup>31)</sup> 이때 친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이 친모의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어도 친모의 남편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생기거나, 친부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모의 남편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친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sup>32)</sup> 친양자입양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25) 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 제1항 제4호

**Tip | 자녀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청구 방법**

**청 구 인**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양식3** 자녀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 107쪽 양식참고

**Tip | (재판확정 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신고 방법**

**신고기한**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sup>33)</sup>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본 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sup>34)</sup>

**성·본 변경신고의 신고의무자**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 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sup>35)</sup>

**신고장소** 성·본 변경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sup>36)</sup>



**양식4** 성·본 변경신고서 > 109쪽 양식참고

- 26)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 제1항
- 27) 민법 제781조 제5항
- 28)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 제3항
- 29) 가사소송규칙 제27조
- 30) 민법 제781조 제6항
- 3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6
- 32) 민법 제908조의 3
- 3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 3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3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 3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5. 친모가 자녀의 친부가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하면, 자녀가 결혼한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나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친모의 남편과 자녀는 서로 남남이며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친모의 남편 사이가 부모자녀 관계가 되려면 ‘친양자 입양’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친양자입양허가 결정을 받으면 자녀는 배우자의 법률상 자녀가 되고 배우자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배우자는 자녀의 친부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부담하며 자녀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반면 자녀와 친부와의 관계는 남남이 됩니다. 친부는 더이상 친권자가 아니며 자녀는 친부의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어야 하고,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부의 동의를 필요합니다.



### Tip | 친양자입양의 요건<sup>37)</sup>(아래 다섯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1년 이상 혼인관계 지속 중
2. 자녀는 미성년자일 것
3. 친부의 동의가 있을 것: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음
4. 자녀의 법정대리인의 승낙
5.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

37) 제90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Tip | 친양자입양과 가족관계등록부

#### 1. 가족관계증명서(입양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음)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미혼모의 배우자가 친부로 기재됨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미혼모의 자녀가 친생자로 기재됨

####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자녀는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음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요건<sup>38)</sup>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Q

### 6. 자녀의 성과 본이 결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누가 친부로 기재되나요?

자녀의 친부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종전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부가 그대로 남습니다. 친부와 의 친자관계를 소멸시키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남편을 아버지로 표시하고 싶다면, 자녀를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친자관계는 단절되고 자녀와 남편 사이에 새로운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sup>39)</sup>

3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39) 민법 제908조의 3

Q

7. 친모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후 자녀가 친부의 성과 본을 따라 변경하기를 원합니다. 친부의 동의 없이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성과 본의 변경 허가가 가능하며,<sup>40)</sup>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서 성과 본의 변경 허가가 내려졌던 판례도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미혼모는 친부의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친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산부인과의 출생기록(‘아버지’란에 친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음), 친부와 교제 당시 찍어두었던 친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그 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성과 본의 변경에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친부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sup>41)</sup>

Q

8. 자녀의 성과 본을 아무 상관도 없는 제3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제3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경허가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 상관도 없는 제3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생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제3의 성과 본으로 신고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은 친부 또는 친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하기 때문입니다.<sup>42)</sup>

40) 민법 제781조 제6항

**Tip | 성과 본 변경허가 시 판단 기준<sup>43)</sup>**

성과 본 변경허가 판단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녀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녀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생길 편견이나 오해 등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 등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하여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Tip | 성과 본 변경이 허가되지 않은 사례**

- 만 1세에 불과한 자녀의 성과 본을 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고 청구한 사안<sup>44)</sup>
- 자녀가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친모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다고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한 사안<sup>45)</sup>

**Tip | 성과 본 변경이 허가된 사례**

부모가 이혼한 후 친부와 자녀 사이에 10여 년간 교류가 없었고, 10년 이상 동거해 온 친모의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여 법률적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우, 자녀(15세)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구한 사안<sup>46)</sup>

41)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1항

42) 민법 제781조 제1항

43) 대법원 2010. 3. 3 자 2009스133결정,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

44) 부산가정법원 2018. 5. 3. 2018느단223심판

45) 대법원 2016. 1. 26.자 2014오4결정

46) 울산지방법원 2008. 1. 28. 2008느단12심판

Q

9. 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신청에서부터 법원의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친부의 의견 청취 및 당사자 심문 등 절차의 지연 여부에 따라 그 기간이 수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성과 본 변경허가심판은 비송사건으로서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사건이 비교적 간이·신속하게 진행되고 신청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므로,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자이거나 친부의 반대가 있는 등 변경허가 가능성이 낮은 경우,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IV〉

# 친권·양육권





## IV 친권 · 양육권



\* 친권·양육권 파트는 미혼모, 미혼부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Q

### 1. ‘친권’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행사하는 것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호·감독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친권자는 자녀가 자신의 보호를 받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정하고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자녀가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동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할 때, 휴대폰을 개통할 때, 여권을 발급받을 때, 수술이 필요할 때 모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를 관리하는 것 역시 친권자의 역할입니다.



#### Tip | 인지와 친권

미혼모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미혼모는 자녀에 대해 단독으로 친권을 갖습니다.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면 친부에게도 친권이 생깁니다. 이 경우 협의를 통해 친권행사자를 정해야 하는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미혼모/친부의 청구에 따라 친권행사자를 지정합니다.<sup>47)</sup>

47) 민법 제909조 제4항, 제5항



## 2. 양육권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행사하는 것인가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권이 자녀의 신분, 재산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권리라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양육의 권리이고,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양육을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키우고자 할 때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양육권을 갖게 되는 쪽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상대방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양육권자가 단독으로 친권행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인지 과정에서 친모와 친부가 공동친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친권과 단독친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모가 공동친권을 가지는 경우 친권의 행사는 부모 공동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친모가 자녀의 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려면 친부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입신고나 학교 입학, 여권발급,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 수술 여부 결정 등의 여러 사안에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친부와 친모가 협의가 잘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친권행사를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Q

**4. 친부로부터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았 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친부가 자녀를 키우겠다면서 법원에 양육권자변경신청을 했습니다. 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친권·양육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거나 친권행사자·양육권자의 변경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sup>48)</sup> 친권의 지정 및 변경은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부가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포기각서를 그간의 양육 상황이나 친부의 양육의사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보아 판단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Tip |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 절차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자녀, 부모, 검사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원: 상대방(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일방) 주소지의 가정법원
- 청구서 양식 : 양육권자 변경심판 청구서

\*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은 심판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sup>49)</sup>



#### 양식1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서 > 110쪽 양식참고

48)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다225776 판결.

49)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 5. 친부가 친권을 영원히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친권상실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의 상실 신고를 받을 경우 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상실은 상당히 엄격한 요건 하에만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은 친권상실이나 친권의 일시정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sup>50)</sup>



### Tip | 법원이 친권상실을 인정한 사례

- 자녀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부에 대한 친권상실을 인정한 사례<sup>51)</sup>
- 자녀들을 두고 가출한 후 찾아오지 않던 친모가 친부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전부 받아서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친모의 친권상실을 인정한 사례<sup>52)</sup>
- 이혼 후 자녀와 연락을 한 적이 없으며, 친권상실심판 청구 당시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도 알 수 없는 친모의 친권상실을 인정한 사례<sup>53)</sup>
- 자녀가 보는 앞에서 친모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친부의 친권상실을 인정한 사례<sup>54)</sup>



### Tip | 친권상실심판 청구 절차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자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 검사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상대방(친부)이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원: 상대방(친부) 주소지의 가정법원
- 청구서 양식 : 친권상실심판 청구서



### 양식2 친권상실심판청구서 > 112쪽 양식참고

50) 민법 제924조

## Q 6. 일정한 기간 동안만 친부의 친권을 정지시킬 수 있나요?

친권의 일시정지도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를 고려해 완전한 친권상실 이외에 2년의 범위 내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1회 연장하여 친권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Tip | 친권의 일부 제한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 이외에도 친권의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권을 가지고 있는 친부가 자녀가 거주해야 하는 곳을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부가 자녀의 거주하는 곳을 정할 권리를 제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sup>51)</sup>

51) 대구지방법원 2012. 1. 12.자 2011느단2986 심판

5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641 판결

53) 서울가정법원 2002. 5. 31. 2002느합10 심판

54) 서울가정법원 2002. 12. 30.자 2002느합92 심판

55) 민법 제924조의 2, 제925조

#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V〉

# 면접교섭





## V 면접교섭



\* 면접교섭 파트는 미혼모, 미혼부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질문과 답변 상 친모는 친부로, 친부는 친모로 바뀌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Q

1. 자녀가 친부를 평생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면접교섭권은 부모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 부모와 자녀간 교류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모가 자녀와 친부 사이의 면접교섭에 의도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부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적법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Tip | 면접교섭권 배제심판 청구절차

-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모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원 : 친부 주소지의 가정법원
- 청구서 양식: 면접교섭권 배제심판 청구서



양식1 면접교섭권배제심판 청구서 > 114쪽 양식참고

Q

2. 자녀가 친부를 만나고 오면 울면서 친부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자녀를 친부와 만나게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것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자녀를 학대하였거나, 면접교섭 과정에서 친부가 친모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하거나, 자녀가 진지하게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은 면접교섭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Tip |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한 사례**

- 친부가 친모를 폭행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녀가 여전히 친부를 두려워하며 면접교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접교섭의 제한을 인정<sup>56)</sup>
- 친부가 면접교섭 중에 자녀를 억지로 데려가려다가 실패했고, 이로 인해 자녀가 심리적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음<sup>57)</sup>
- 이혼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만남을 거부하던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법원이 가족 캠프 등을 주선했으나 일방적으로 계속 불참하던 친모가 면접교섭을 요구해온 사안에서, 자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sup>58)</sup>

56) 부산가정법원 2015.12.7.자 2015노단200053 심판

57) 서울가정법원 2013.9.25.자 2012드단99047, 2013드단570 판결

58) 서울가정법원 2010.11.15.자 2009브12 결정

**Q** 3. 친부에게 면접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로도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Q** 4. 친부가 면접교섭을 못한다면 양육비도 지급할 수 없다며 양육비를 빌미로 면접교섭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면접교섭과 양육비이행은 대가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고, 이와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면접교섭을 허용하겠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친부가 면접교섭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등 양육비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부가 자녀의 의사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면접교섭 조건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배제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VI〉

# 양육비 청구





## VI 양육비 청구



\* 양육비 청구 파트는 미혼모, 미혼부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질문과 답변 상 친모는 친부로, 친부는 친모로 바뀌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Q 1. 인지 이후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며, 1심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친모가 법원에 양육비 청구의 소장을 제기함으로써 양육비 청구 소송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소장의 복사본에 해당하는 '소장 부분'을 친부에게 보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이후 친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며, 판결 확정과 함께 소송이 종료됩니다. 통상 양육비 청구 소송은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쟁점의 복잡성이나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여부 등에 따라 판결이 늦춰지는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식1 양육비심판청구서** > 116쪽 양식참고

### Q 2. 인지소송 없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지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친부와 별도로 민사상 합의를 하면 이를 통해 양육비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친부와 친모가 자발적으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친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지소송을 거쳐야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 3.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인지청구를 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인지청구와 함께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친부나 친조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sup>59)</sup>

Q

### 4. 자녀가 이제껏 친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러한 사실이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불리한 사실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가 부모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라면,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두 제도는 조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더라도 친부로서 인지되면 양육비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5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 무 2757, 2764 판결

Q

**5.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매월 받고 있는데, 양육비가 더 필요합니다. 양육비를 증액해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주기로 약속한 학원비가 오름 경우 등과 같이 합의가 있었던 사항에 변화가 생겨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합의 없이도 법원에 양육비변경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부의 소득 또는 재산이 늘어나 양육비 증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양육비 증액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식2 양육비변경심판청구서 > 118쪽 양식참고**

Q

**6.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새로이 제기하는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친모와 친부 사이에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적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Tip | 과거 양육비를 증명하는 방법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에는 과거에 양육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소요되는 필수 생활비, 즉 의식주에 필요한 금원, 자녀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병원비 등에 관한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자녀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친모의 소득에 관한 자료, 친부의 소득에 관한 자료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100%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과거 양육비를 전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금액을 과거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 7. 과거 양육비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경우, 과거에 양육비로 지출한 비용의 100%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시에 거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책정합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으로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양육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의 액수, 친부가 부양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된 시기, 친모가 주장하는 양육비가 양육에 사용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여부, 만일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큰 금액의 특별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과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이 있습니다.<sup>60)</sup>

60)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61)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안내는 144쪽을 참고하세요

62)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 소득을 조사해 한 줄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습니다.

63)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3373?Mcode=20391>

Q

## 8.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곳인가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과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통한 양육비 이행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를 포함한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sup>61)</sup>

Q

## 9. 양육비이행관리원 외에도 양육비 청구를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가족, 조부모가족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5%<sup>62)</sup>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이행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할 자료 등을 준비해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가면 됩니다.<sup>63)</sup>



### Tip | 양육비이행지원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은 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거주 외 국민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 가족관계증명서, 증인 진술서 등



## 10. 친부가 아직 학생이라 소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친부에게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①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②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③ 고액의 치료비, ④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⑤ 부모의 재산상황, ⑥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부가 부담하는 양육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또한 만일 친부가 미성년자라면 친부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sup>64)</sup>



### Tip |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sup>65)</sup>

| 부모합산<br>소득<br>(4인) | 0~<br>199만 원                   | 200~<br>299만 원                   | 300~<br>399만 원                       | 400~<br>499만 원                       | 500~<br>599만 원                       | 600~<br>699만 원                       | 700~<br>799만 원                       | 800~<br>899만 원                       | 900만 원<br>이상                 |
|--------------------|--------------------------------|----------------------------------|--------------------------------------|--------------------------------------|--------------------------------------|--------------------------------------|--------------------------------------|--------------------------------------|------------------------------|
| 자녀<br>만 나이         | 표준양육비<br>양육비 구간                | 표준양육비<br>양육비 구간                  | 표준양육비<br>양육비 구간                      | 표준양육비<br>양육비 구간                      | 표준양육비<br>양육비 구간                      | 표준양육비<br>양육비 구간                      | 표준양육비<br>양육비 구간                      | 표준양육비<br>양육비 구간                      | 표준양육비<br>양육비 구간              |
| 0~2세               | 532,000<br>219,000~<br>592,000 | 653,000<br>593,000~<br>735,000   | 818,000<br>736,000~<br>883,000       | 948,000<br>884,000~<br>1,026,000     | 1,105,000<br>1,027,000~<br>1,199,000 | 1,294,000<br>1,200,000~<br>1,341,000 | 1,388,000<br>1,342,000~<br>1,487,000 | 1,587,000<br>1,488,000~<br>1,670,000 | 1,753,000<br>1,671,000<br>이상 |
| 3~5세               | 546,000<br>223,000~<br>639,000 | 732,000<br>640,000~<br>814,000   | 896,000<br>815,000~<br>978,000       | 1,053,000<br>975,000~<br>1,121,000   | 1,189,000<br>1,122,000~<br>1,284,000 | 1,379,000<br>1,285,000~<br>1,477,000 | 1,576,000<br>1,478,000~<br>1,654,000 | 1,732,000<br>1,655,000~<br>1,828,000 | 1,924,000<br>1,829,000<br>이상 |
| 6~11세              | 623,000<br>244,000~<br>699,000 | 776,000<br>700,000~<br>864,000   | 952,000<br>865,000~<br>1,044,000     | 1,136,000<br>1,045,000~<br>1,219,000 | 1,302,000<br>1,220,000~<br>1,408,000 | 1,514,000<br>1,409,000~<br>1,559,000 | 1,605,000<br>1,560,000~<br>1,717,000 | 1,830,000<br>1,718,000~<br>1,998,000 | 2,164,000<br>1,998,000<br>이상 |
| 12~14세             | 629,000<br>246,000~<br>701,000 | 774,000<br>702,000~<br>884,000   | 995,000<br>885,000~<br>1,107,000     | 1,220,000<br>1,108,000~<br>1,303,000 | 1,386,000<br>1,304,000~<br>1,484,000 | 1,582,000<br>1,485,000~<br>1,650,000 | 1,718,000<br>1,651,000~<br>1,797,000 | 1,876,000<br>1,798,000~<br>2,144,000 | 2,411,000<br>2,144,000<br>이상 |
| 15~18세             | 678,000<br>260,000~<br>813,000 | 948,000<br>814,000~<br>1,076,000 | 1,205,000<br>1,077,000~<br>1,290,000 | 1,376,000<br>1,291,000~<br>1,483,000 | 1,610,000<br>1,494,000~<br>1,715,000 | 1,821,000<br>1,686,000~<br>1,895,000 | 1,970,000<br>1,896,000~<br>2,048,000 | 2,124,000<br>2,048,000~<br>2,395,000 | 2,664,000<br>2,395,000<br>이상 |

☺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6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65)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 Tip | 표준양육비 계산 사례

#### 1. 가족관계

원고(친모), 피고(친부), 만2세의 사건본인(자녀)

#### 2. 소득

친모 - 월평균 200만원 / 친부 - 월평균 250만원

#### 3. 사건 본인의 양육자

친모

#### 4. 계산 방법

친모와 친부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금액은 450만 원이고 사건본인은 만2세이므로 위 표상의 평균양육비는 948,000원입니다. 자녀가 1인인 경우 평균양육비의 금액을 10% 가산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사건본인을 위해 소요되는 월 평균 양육비는 1,042,800 원입니다. 이를 친모와 친부의 소득의 비율대로 나누면 친부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는 579,333원입니다( $=1,042,800 \times 250 \text{만} / 450 \text{만}$  원)

#### \*유의사항

위와 같은 계산방법은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하는 사례로 모든 사건이 위 표에 따라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 기준표는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이지 저 표대로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Q

### 11. 친부가 결혼하여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양육비 산정시 그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양육비가 감액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친부에게 부양해야 할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정하는 것은 친부에게 부양할 다른 가족이 있는지 이외에도 친부와 친모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친부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를 감액할 사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2. 양육비 증액은 언제 가능한가요? 매번 법원을 통해서 증액을 청구해야만 하나요?

양육비 증액은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증액 할 것인지는 1차적으로 친모와 친부 사이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증액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갑자기 아프게 되어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여 양육비 증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친모와 친부가 협의하지 않은 고액의 과외비나 유학비 등을 받기 위한 양육비 증액은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자녀의 복리에 필수적이지는 아니하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13. 친부가 양육비를 감액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하지만 법원은 양육비 감액기준을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sup>66)</sup> 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양육비 금액이 정해진 경위, 현재 왜 감액이 필요한 것인지, 양육비 이외에 친모가 친부로부터 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현재 친모와 친부의 재산상태, 친부의 재산이 없어져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렇게 재산이 없어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66)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결정



#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Ⅶ〉

양육비이행  
확보제도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VII

## 양육비 이행확보제도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본 파트는 미혼모와 미혼부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질문과 답변 상 친모는 친부로, 친부는 친모로 바뀌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Q

1. 양육비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친부가 재산을 빼돌릴까봐 걱정입니다.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양육비청구소송이 시작된 뒤에 재산을 숨길 것이 예상되면 가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양육비 소송 전에 하는 것이 좋지만, 소송 중에도 친부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ip | 가압류란?

가압류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또는 재판을 하는 중이라도 돈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친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임대차보증금채권 등이 대표적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주의할 것은 실질적으로 친부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법적 명의를 친부가 아닐 경우에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친부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 본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친부로부터 어떻게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

양육비부담조서나 양육비에 관한 판결문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민사상의 강제집행은 물론 양육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마련된 가사소송법상의 특별한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 아래와 같이 사안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3. 친부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친부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는 급여에 대해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모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친부가 다니는 회사로부터 직접 친부의 월급에서 공제한 양육비를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친부의 최저생계비 보호를 위해 급여의 50% 이상은 직접지급받을 수 없고, 만일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185만 원을 제외한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1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 > 120쪽 양식참고

Q

4.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급여를 받거나 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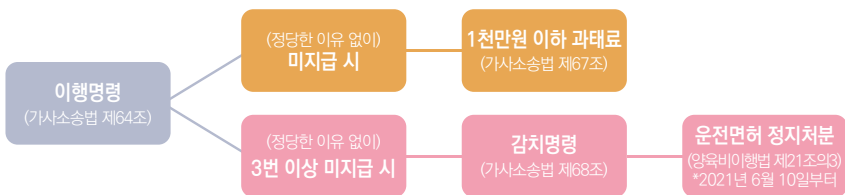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선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통해 친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습니다.<sup>67)</sup> 친부가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친모는 친부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도 있고,<sup>68)</sup> 이행명령 이후 3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부를 유치장 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수감하여 달라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sup>69)</sup> 그리고 2021년 6월 10일 부터는 감치명령을 받았던 친부가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친부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sup>70)</sup>



**양식2** 이행명령신청서 > 124쪽 양식참고



**양식3**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 및 과태료신청서 > 126쪽 양식참고



### 〈 양육비 미지급시 대응방안 〉

67) 가사소송법 제64조

68)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69)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7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

Q

5. 친부가 양육비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현재의 법 제도 아래에서는 형사처벌은 안 됩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친모의 신청을 통해 법원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았는데도 친부가 양육비 지급을 3회 이상 미루었다면 친부를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도록 하는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sup>71)</sup>

Q

6. 친부가 양육비도 안 주고 생계가 너무 어려운데,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미혼모·부에게 최대 12개월까지(기본 9개월, 3개월 연장 가능) 월 20만 원씩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구비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 127쪽 양식참고



**양식5**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연장신청서 > 128쪽 양식참고

71)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 Tip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격요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1.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이행 지원을 신청한 미혼모·부 중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양육비부담조서나 또는 법원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4. 미혼모·부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미혼모·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예: 자녀의 질병,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 주거비 또는 공과금 2개월 이상 체납 등)
  -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미혼모·부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③ 미혼모·부 대신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④ 미혼모·부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 ⑤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Tip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1부
- 긴급복지지원 결과통보서 1부(지원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 긴급지원을 받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1부: 수도, 전기 등 공과금 연체 내역이나 계좌내역 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양육비 판결문 1부
- 친모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 친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Ⅷ〉

# 상속





## VIII 상속



\* 본 파트는 미혼모와 미혼부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질문과 답변 상 친모는 친부로, 친부는 친모로 바뀌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Tip | 용어설명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상속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사망한 사람의 자녀, 부모, 배우자 등)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

**상속채무**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빚



### 1. 친부가 사망하면 미혼모의 자녀는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친부와 자녀 사이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로 인정받지 못해 자녀는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인지가 되었다면 자녀는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받는 재산에는 예금채권, 동산, 부동산과 같은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친부의 빚과 채무도 포함됩니다. 친부에게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 포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자녀가 부담을 지지 않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3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ip |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내 용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증권 등)·토지·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청,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http://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2. 친부에게 다른 자녀,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sup>72)</sup>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여러 명이 같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0.5 가산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72) 민법 제1000조, 제1009조.



### Tip | 상속순위

\* 최우선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상속을 받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가장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우선위로 하고 (예 : 손자녀보다 자녀가 상속 우선순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이들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의 상속분은 균분(1/n)으로 합니다.
  - 배우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 상속분을 1.5:1로 분할하여 배우자가 1.5를 받습니다.



### Tip | 사례로 알아보는 상속순위와 상속분

\*아래의 사례들은 인자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례 1〉 친부에게 배우자가 있고, 다른 자녀는 없어요. 친부의 부모님은 아직 살아 계신다고 들었어요.

- 친부의 자녀와 배우자가 제1순위 상속인이고, 친부의 부모는 제2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친부와 미혼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와 친부의 현재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친부의 재산에 대해 친부의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사례 2〉 친부에게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가 2명 있어요. 친부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 친부와 미혼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 친부와 현재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 친부의 현재 배우자가 제1순위 상속인이고, 친부의 부모는 제2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미혼모의 자녀를 포함하여 친부의 자녀들(이 경우 총 3명)과 현재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분은 친부의 배우자가 1.5, 자녀 3명이 각 1씩의 지분을 갖습니다.

〈사례 3〉 친부에게 배우자는 없고, 친부의 부모님은 아직 살아 계신다고 해요.

- 친부에게 현재 배우자가 없으므로, 친부와 미혼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친부의 부모는 제2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친부와 미혼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친부의 재산을 전부 상속 받습니다.



### 3. 친부가 사망하였을 경우, 자녀가 친부의 채무를 떠안게 될 수도 있나요?

친부가 인지를 해서 자녀가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친부가 진 빚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채무를 상속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녀는 상속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고(상속포기)<sup>73)</sup> 친부에게 상속을 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친부의 채무를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한정승인)<sup>74)</sup> 이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설령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을 받았더라도(단순승인)<sup>75)</sup>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sup>76)</sup>



#### Tip |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의미

-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 받는 것<sup>77)</sup>  
**단순승인 방법**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됨<sup>78)</sup>
- **상속포기**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것  
**상속포기 방법** 상속개시 있음(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서”(서식 1)와 첨부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의 심판을 청구<sup>79)</sup>
- **한정승인** 상속받을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 받는 것<sup>80)</sup>  
**한정승인 방법** 상속개시 있음(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서식 2)와 첨부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한정승인의 심판을 청구  
설령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했다라도,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음<sup>81)</sup>



**양식1**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 129쪽 양식참고



**양식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131쪽 양식참고

Q

#### 4. 친모가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친모가 사망했을 때 그 보험금을 자녀가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모가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생명보험금을 받을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면 됩니다.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계약 당시에 정할 수도 있고, 계약 후에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친모가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자녀가 친모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됩니다.<sup>82)</sup> 다만 이 경우 친모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친모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73) 민법 제1019조.

74) 민법 제1028조.

75) 민법 제1025조.

76) 민법 제1019조 제3항.

77) 민법 제1025조.

78) 민법 제1026조.

79) 민법 제1041조.

80) 민법 제1028조.

81) 민법 제1030조.

82) 상법 제733조.



## 5. 친모가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나중에 친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를 인지한 친부가 자녀의 보호자로서 그 보험금을 받아갈 수도 있나요?

자녀가 성인이라면 친부가 보험금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녀가 보험금을 받도록 지정되어 있더라도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sup>83)</sup>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는 자녀를 인지할 때 부모의 협의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협의 결과 엄마가 단독 친권자가 되었는데 엄마의 사망 후에도 친부가 친권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친부가 아닌 미성년후견인이 자녀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sup>84)</sup>



### Tip | 미성년후견인이란?

- **의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에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임된 후견인
- **지정·선임 방법** 미성년후견인의 숫자는 한 명이며, 유언에 의해 지정되거나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됨
- **권한**
  - ①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권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 거소지정권(거주지를 지정할 권리), 징계권 등이 있음<sup>85)</sup>
  - ②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권한: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의무, 후견인의 채권과 채무의 제시의무, 보수청구권, 사무비용지출권 등이 있음

83) 민법 제916조, 제920조.

84) 민법 제909조의2.

85) 민법 제945조.



#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IX〉

# 부록 I

- 법률 양식





## IX 부록



## 인지-양식1 인지신고서1- 친부가 스스로 인지신고할 때(임의인지)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br>(2020년 7월 8일) |                 |                                             |           |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                       |  |
|-------------------------------|-----------------|---------------------------------------------|-----------|--------------------------------------------------------|------------------------|------------|-----------------------|--|
| ① 피인지자                        | 성명              | 한글                                          | 아이의 성명    | 본<br>(한자)                                              | 아이의 본<br>예) 전주<br>(全州) | 성 별        | ① 남 ② 여<br>(아이 성별 체크) |  |
|                               |                 | 한자                                          | 아이의 한자성명  |                                                        |                        | 주민등록<br>번호 | 아이의<br>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아이의 주민등록등본상 본적                              |           |                                                        |                        |            |                       |  |
|                               | 주 소             | 아이가 실제 사는 곳 주소                              |           |                                                        |                        |            |                       |  |
|                               | 모의성명 및<br>등록기준지 | 성 명                                         | 친모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친모의 주민등록번호             |            |                       |  |
| 등록기준지                         |                 | 친모의 주민등록등본상 본적                              |           |                                                        |                        |            |                       |  |
| ② 인지자                         | 성명              | 한글                                          | 친부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친부 주민등록번호              |            |                       |  |
|                               |                 | 한자                                          | 친부의 한자성명  |                                                        |                        |            |                       |  |
| 등록기준지                         | 친부의 주민등록등본상 본적  |                                             |           |                                                        |                        |            |                       |  |
| ③ 인지판결확정일자<br>(년. 월. 일)       |                 | 인지청구소송의 판결 받은 날                             |           |                                                        |                        | 법원명        | 판결 받은 법원<br>예) 서울가정법원 |  |
| ④ 동의자<br>(성년후견인)              |                 | ⑤ 인 또는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⑤ 친권자                         | ① 부             | 성명                                          | 친모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친모의 주민등록번호             |            |                       |  |
|                               | ② 모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③ 부모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자정일자                          |                 |                                             |           | 지정원인                                                   | ① 협의<br>② ( ) 법원의 재판   |            |                       |  |
| ⑥ 성본<br>계속사용                  |                 | 원인일자                                        | 년 월 일     | 원인                                                     | ① 협의<br>② ( ) 법원의 재판   |            |                       |  |
| ⑦ 기타사항                        |                 |                                             |           |                                                        |                        |            |                       |  |
| ⑧ 신고인                         | 성명              | 친부의 성명                                      | ⑤ 인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친부의 주민등록번호             |            |                       |  |
|                               | 자격              | ① 부 ② 모 ③ 유언집행자 ④ 소 제기자 ⑤ 소의 상대방 ⑥ 기타(자격: ) |           |                                                        |                        |            |                       |  |
|                               | 주소              | 친부가 실제 사는 곳 주소                              |           |                                                        |                        |            |                       |  |
|                               | 전화              |                                             |           |                                                        | 이메일                    |            |                       |  |
| ⑨ 제출인                         |                 | 성명                                          | 친부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친부의 주민등록번호             |            |                       |  |



## 인자-양식2

## 인지신고서2- 인지청구소송 후 인지신고할 때(강제인지)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br>(2020년 7월 8일) |                    |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           |                        |                       |                       |
|-------------------------------|--------------------|------------------------------------------------------------|----------|-----------|------------------------|-----------------------|-----------------------|
| ① 피인자                         | 성명                 | 한글                                                         | 아이의 성명   | 본<br>(한자) | 아이의 본<br>예) 전주<br>(주소) | 성 별                   | ① 남 ② 여<br>(아이 성별 체크) |
|                               |                    | 한자                                                         | 아이의 한자성명 |           |                        | 주민등록<br>번호            | 아이의<br>주민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아이의 주민등록등본상 본적                                             |          |           |                        |                       |                       |
|                               | 주 소                | 아이가 실제 사는 곳 주소                                             |          |           |                        |                       |                       |
|                               | 모의성명 및<br>등록기준지    | 성 명                                                        | 친모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친모의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 친모의 주민등록등본상 본적                                             |          |           |                        |                       |                       |
| ② 인자                          | 성명                 | 한글                                                         | 친부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친부 주민등록번호              |                       |                       |
|                               |                    | 한자                                                         | 친부의 한자성명 |           |                        |                       |                       |
|                               | 등록기준지              | 친부의 주민등록등본상 본적                                             |          |           |                        |                       |                       |
| ③ 인지판결확정일자<br>(년.월.일)         |                    | 인지청구소송의 판결 받은 날                                            |          |           | 법원명                    | 판결 받은 법원<br>예) 서울가정법원 |                       |
| ④ 동의자<br>(성년후견인)              |                    | ① 인 또는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⑤ 친권자                         | ① 부<br>② 모<br>③ 부모 | 성명                                                         | 친모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친모의 주민등록번호             |                       |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지정일자               | 친권자지정 재판이 있었다면<br>판결이 난 날짜<br>/부모가 친권에 대해 협의한 경우<br>협의한 날짜 |          |           | 지정원인                   | ① 협의<br>② ( )법원의 재판   |                       |
| ⑥ 성본<br>계속사용                  | 원인일자               | 년 월 일                                                      |          | 원인        | ① 협의<br>② ( )법원의 재판    |                       |                       |
| ⑦ 기타사항                        |                    |                                                            |          |           |                        |                       |                       |
| ⑧ 신고인                         | 성 명                | 친모의 성명 ① 인 또는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친모의 주민등록번호             |                       |                       |
|                               | 자 격                | ① 부 ② 모 ③ 유언집행자 ④ 소 제기자 ⑤ 소의 상대방 ⑥ 기타(자격: )                |          |           |                        |                       |                       |
|                               | 주 소                | 친모가 실제 사는 곳 주소                                             |          |           |                        |                       |                       |
|                               | 전 화                |                                                            |          |           | 이메일                    |                       |                       |
| ⑨ 제출인                         | 성 명                | 친모의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친모의 주민등록번호             |                       |                       |



## 출생-양식1 출생신고서

|                                                                                                   |                                            |                                                        |                        |           |             |         |               |                              |
|---------------------------------------------------------------------------------------------------|--------------------------------------------|--------------------------------------------------------|------------------------|-----------|-------------|---------|---------------|------------------------------|
| <b>출생신고서</b><br>( 2000년 00월 00일)                                                                  |                                            |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① 출생자                                                                                             | 성명                                         | *한글<br>한자                                              | (성) / (명)<br>(성) / (명) | 본<br>(한자) | 예: 金海<br>金家 | *성별     | ① 남<br>② 여    | * ① 혼인중의 출생자<br>* ② 혼인외의 출생자 |
|                                                                                                   | *출생일시 2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                                                        |                        |           |             |         |               |                              |
|                                                                                                   | *출생장소 ① 자택 ② 병원 ③ 기타 출생장소의 주소              |                                                        |                        |           |             |         |               |                              |
|                                                                                                   |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친모의 등록기준지                     |                                                        |                        |           |             |         |               |                              |
|                                                                                                   | *주소                                        |                                                        | 엄마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엄마의 주소 |           |             |         | 세대주 및 관계      | 엄마이름 의 자                     |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                                                        |                        |           |             |         |               |                              |
| ② 부모                                                                                              | 부                                          | 성명                                                     | (한자: )                 | 본(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모                                          | 성명                                                     | 엄마이름 (한자:엄마이름한자)       | 본(한자)     | 엄마본적        | *주민등록번호 | ○○○○○○-○○○○○○ |                              |
|                                                                                                   | *부의 등록기준지                                  |                                                        |                        |           |             |         |               |                              |
|                                                                                                   | *모의 등록기준지                                  |                                                        |                        | 엄마의 본적    |             |         |               |                              |
| *혼인신고서 자녀의 성 본을 모의 성 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③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                                            |                                                        |                        |           |             |         |               |                              |
|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등록기준지                                                  |                        |           |             |         |               |                              |
| ④ 기타사항                                                                                            |                                            |                                                        |                        |           |             |         |               |                              |
| ⑤ 신고인                                                                                             | *성명                                        | 엄마이름 (인) 또는 서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자격                                        | ① 부 ② 모 ③ 동거친족 ④ 기타(자격: )                              |                        |           |             |         |               |                              |
|                                                                                                   | 주소                                         | 엄마의 주소                                                 |                        |           |             |         |               |                              |
|                                                                                                   | *전화                                        | 엄마의 전화번호                                               |                        |           |             | 이메일     | 엄마의 이메일       |                              |
| ⑥ 제출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사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재와 다른 사실을 기록 하거나 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표시 자료는 인구동향조사 목적으로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것으로,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 동향 조사         |                                                                     |                                           |
|------------------|---------------------------------------------------------------------|-------------------------------------------|
| 출생자에 관한 사항       |                                                                     |                                           |
| ⑦ 임신주(週)수        | 임신 □□주 □□일                                                          | ⑧ 신생아 체중 □.□□□kg                          |
| ⑨ 다태아 여부 및 출생순위  | ① 단태아 ② 쌍태아(쌍둥이) → 쌍둥이 중 ① 첫번째 ② 두번째<br>③ 삼태아(세쌍둥이) 이상 → □쌍둥이 중 □번째 |                                           |
| 출생자의 부(父)에 관한 사항 |                                                                     |                                           |
| ⑩ 국 적            | ① 대한민국(출생시 국적취득)<br>②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br>③ 외국(국적: )  |                                           |
|                  | 출생자의 모(母)에 관한 사항                                                    |                                           |
|                  | ① 대한민국(출생시 국적취득)<br>②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br>③ 외국(국적: )  |                                           |
| ⑪ 실제생년월일         | 양력 / 음력 년 월 일                                                       | 양력 / 음력 년 월 일                             |
| ⑫ 최종종업학교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

|              |                                  |               |                     |               |
|--------------|----------------------------------|---------------|---------------------|---------------|
| ⑬ 직 업        | 1 관리자                            |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1 관리자               |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              | 3 사무종사자                          | 4 서비스종사자      | 3 사무종사자             | 4 서비스종사자      |
|              | 5 판매종사자                          |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5 판매종사자             |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              |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              | 9 단순노무 종사자                       |               | 9 단순노무 종사자          |               |
|              | 10 학생                            | 11 가사         | 10 학생               | 11 가사         |
|              | 12 군인                            | 13 무직         | 12 군인               | 13 무직         |
| ⑭ 실제결혼생활 시작일 | 년 월 일 부터                         |               |                     |               |
| ⑮ 모의 총 출산아 수 | 이 아이까지 총 □□명 출산 (□□명 생존, □□명 사망) |               |                     |               |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읍면동접수 |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
|-------|-------------|------------------|
|       | *주민등록번호     |                  |
|       | 년 월 일(인)    |                  |

### 작성방법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됨)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시는 24시간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시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 출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란: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의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③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④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

- 출생전에 태어인지 한 사실 및 태어인지 신고한 관서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간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⑥란: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⑦~⑨ 출생자란: 출생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⑨란: 다태아(쌍둥이 이상)여부는 실제로 출생한 아이의 수와 관계없이 임신하고 있던 당시의 태아수에 “○”표시하며, 다태아 중 출생신고 대상 아이마다 출생순위가 몇 번째인지를 표시합니다.

⑩~⑮ 부모란: 출생당시 출생자 부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⑫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고등학교에 “○”표시

⑬란: 아이가 출생할 당시의 부모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①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③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경영, 보험, 감사, 상담 안내·통계 등)
- ④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변보호, 의료보조, 이·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⑤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등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교육, 산림의 경작 및 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운송장비의 운전 등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 ⑩ 가사 : 전업주부 등 ⑫ 군인 : 의무복무 중인 장교 및 사병 제원, 직업군인 해당 ⑬ 무직 : 특정한 직업이 없음

⑮란 : 모의 총 출산아수 - 신고서상 아이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그 중 생존아와 사망아 수를 기재하며,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 첨 부 서 류

1.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것(출생증명서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에 따로 정함).
-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 자녀의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가 족 관 계 증 명 서(일 반)

|       |                 |               |                |    |    |
|-------|-----------------|---------------|----------------|----|----|
| 등록기준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                |    |    |
| 구분    | 성 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본인    | 이준영(李俊永)        | 2006년 01월 22일 | 060122-3456789 | 남  | 全州 |
| 가족사항  |                 |               |                |    |    |
| 구분    | 성 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모     | 지선우(池善虞)        | 1966년 04월 23일 | 660423-2345678 | 여  | 忠州 |

위 가족관계증명서(일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0 년 07 월 09 일

○○시(읍·면)장 ○ ○ ○

직인

※ 위 증명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일반증명서입니다.



출생-양식3

출생확인 신청서

## 출생확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엄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엄마의 등록기준지  
               주    소    엄마의 주소

**사건본인**    성    명    아이의 이름  
               출생연월일    아이의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아이의 등록기준지  
               주    소    엄마와 함께 사는 경우, 엄마의 주소

## 신청취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지와 같이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한다.  
 라는 확인을 구함.

## 신청이유

○○○○년 ○○월 ○○일

신청인 :    엄마 이름 (인)

예) 서울중앙지방    법원 귀중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협 의 서

부의 성명      친부의 이름  
 등록기준지      친부의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 등에서 확인 가능  
 주      소      친부의 주소

모의 성명      친모의 이름  
 등록기준지      친모의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 등에서 확인 가능  
 주      소      친모의 주소

피인지자 성명      자녀의 이름  
 등록기준지      자녀의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 등에서 확인 가능  
 주      소      자녀의 주소

위 혼인외 자(피인지자)의 성과 본을 인지 전의 성과 본으로 계속 사용할 것을 협의합니다.

년 . 월 . 일 .

부      친부의 이름      ① (서명)

모      친모의 이름      ① (서명)

- 덧붙임: 1. 제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  
 2. 출석하지 않은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대한 공증서 1부. 끝.

### ※ 유의사항

1.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한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부터 제23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자녀의 성과 본-양식2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서

###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서

청구인 겸 사건본인: 자녀의 이름 (☎: 자녀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녀의 주소

등 록 기준지: 자녀의 등록기준지

인지액 5,000원  
× 사건본인 수

위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sup>5)</sup> 친권자 (부,모): 친모의 이름 (☎: 친모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친모의 주민등록번호

주 소: 친모의 주소

송 달 장 소: (위 주소 외에 서류를 받을 장소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류를 받을  
장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성(한글)(한자: 성(한자))”과 본“본(한글)(한자:본(한자))”를 계속  
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청구 외 ○○○[친부의 이름]가 20xx. xx. xx.[인지신고가 이루어진 일자]  
청구인 겸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모인 △△△[친모의 이름]와 청구인  
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본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법정대리인이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반대하는 인지한 부(父)인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특별대리인'이 자를 대리하여야 함

##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자녀(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연도 . 월 . 일.

청구인 : **자녀의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특별대리인) : **친모의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서울〇〇법원 귀중

### ※ 청구원인 작성 예시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청구 외 〇〇〇가 20 . . . 청구인 겸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모인 〇〇〇와 청구인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본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각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3.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성과 본-양식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친모의 이름 (☎ : 친모의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친모의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친모의 주소  
 송 달 장 소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인지액 5,000원  
 × 사건본인 수

사건본인 성 명 :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자녀의 주소  
 등 록 기준지 : 자녀의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들)의 성을 “성(한글)(한자: 성(한자))”으로, 본을 “본(한글)(한자:본(한자))”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등 (해당 □안에 √ 표시, 내용 추가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 후 내용기재])
  - 가. 사건본인은 (친부 )과(와) (친모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 친부의 주소는 ( )입니다.
  - 나. □ (친부 )과(와) (친모 청구인 )는(은) ( 20 . . . ) 이혼하였습니다.  
 □ ( )는(은) ( 년 월 일 ) 사망하였습니다.  
 □ ( )는(은) ( 년 월 일 ) 사건본인을 입양하였습니다.

2.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하는 이유 (해당 □안에 √ 표시, 내용 추가)  
 사건본인이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학교나 사회생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 후 내용 기재]

- ☐ (친모 청구인 )과(와) (20 . . . ) 혼인하여 사건본인의 계부가 된 ( )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위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이유(별지에 서술식으로 기재)

### 첨 부 서 류

- |                                           |      |
|-------------------------------------------|------|
| 1. 청구인의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 각 1통 |
| 1. 사건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성년자인 경우)         | 1통   |
| 1.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일 경우 사건본인의 진술서        | 1통   |
| 1. 자녀(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 각 1통 |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 |                          |      |
|--------------------------|------|
| 1.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친부, 계부)   | 각 1통 |
| 1. 입양관계증명서(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 1통   |
- ※ 친부가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2007. 12. 31. 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연도 . 월 . 일 .

청구인 : 친모의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각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3.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사건본인의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심리를 위  
 하여, 사건본인의 친부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기재하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를 밝히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계부와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거나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  
 멸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부가 부로 기재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 자녀의 성과 본-양식4 성·본 변경신고서

| 성·본 변경 신고서<br>(      년      월      일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br>하기 바랍니다. |            |  |  |  |  |  |  |  |  |
|---------------------------------------------------------------------------------------------------------------------------------------------------------------------------------------------------------------------------------------------------------------------------------------------------------------------------------------------------------------------------------------------------------------------------------------------------|--------------|-----------------------------------------------|------------------------|--------|--|-------------|--------|--|-----------------------------------------|------------------------------------------------------------|------------|--|--|--|--|--|--|--|--|
| ①<br>사건본인                                                                                                                                                                                                                                                                                                                                                                                                                                         | 성명           | 한글                                            | (성) 성(한글) / (명) 이름(한글) |        |  |             |        |  |                                         | 주민등록번호                                                     |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한자                                            | (성) 성(한자) / (명) 이름(한자) |        |  |             |        |  |                                         |                                                            |            |  |  |  |  |  |  |  |  |
|                                                                                                                                                                                                                                                                                                                                                                                                                                                   | 등록기준지        | 자녀의 등록기준지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자녀의 주소                                        |                        |        |  |             |        |  |                                         |                                                            |            |  |  |  |  |  |  |  |  |
| ②<br>성·본                                                                                                                                                                                                                                                                                                                                                                                                                                          | 변경전 성<br>(姓) | 한글                                            |                        | 한<br>자 |  | 변경전<br>본(本) | 한글     |  | 한자                                      |                                                            |            |  |  |  |  |  |  |  |  |
|                                                                                                                                                                                                                                                                                                                                                                                                                                                   | 변경한 성<br>(姓) | 한글                                            |                        | 한<br>자 |  | 변경한<br>본(本) | 한글     |  | 한자                                      |                                                            |            |  |  |  |  |  |  |  |  |
| ③허가일자                                                                                                                                                                                                                                                                                                                                                                                                                                             |              | 성·본변경허가심판서<br>등본에 기재된 연월일                     |                        |        |  |             | 법원명    |  | 법원명 기재                                  |                                                            |            |  |  |  |  |  |  |  |  |
| ④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⑤<br>신고인                                                                                                                                                                                                                                                                                                                                                                                                                                          | 성 명          | 친모의 이름 ①인 또는 서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친모의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자 격          | ① 본인    ② 법정대리인    ③ 기타(자격: 해당 사항에 체크 또는 기재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친모의 주소                                        |                        |        |  |             | 전 화    |  |                                         | 이메일                                                        |            |  |  |  |  |  |  |  |  |
| ⑥제출인                                                                                                                                                                                                                                                                                                                                                                                                                                              | 성 명          |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br>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       |                        |        |  |             | 주민등록번호 |  |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br>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 |                                                            |            |  |  |  |  |  |  |  |  |
| <b>작 성 방 법</b> <p>※ 본 신고는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p> <p>②란 : 사건본인의 성·본은 변경 전의 성·본과 변경한 성·본을 나누어 기재합니다.</p> <p>③란 : 성·본 변경허가일자에는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p> <p>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p> <p>⑤란 :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성·본 변경 후의 성명으로 기재합니다.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br/>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p> <p>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br/>입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p> |              |                                               |                        |        |  |             |        |  |                                         |                                                            |            |  |  |  |  |  |  |  |  |
| <b>첨 부 서 류</b> <p>1.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 1부.</p> <p>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p> <p>-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p> <p>-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p> <p>-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p> <p>※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p>                                                                                                                                                                                                |              |                                               |                        |        |  |             |        |  |                                         |                                                            |            |  |  |  |  |  |  |  |  |



## 양육권자 변경심판 청구서

청 구 인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

상대방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

사건본인 자녀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

###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1. 상대방은....(구체적으로 양육권자가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sup>5</sup>
1. 소갑 제2호증
1. 소갑 제3호증

실질적인 증거자료<sup>6</sup>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 청 구 원 인

1. 위 증거자료
1. 청구서 사본
1. 납부서

각 1통  
1통

2000년 . 0 월 . 0 일 .

위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00지방법원 귀중

5) 증거를 제출하게 될 경우 붙게 되는 '증거번호'

6) 구체적으로 양육권자가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의 명칭. 사진을 제출하면 '사진'이라고 쓰고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제목,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기재함.



## 친권상실심판청구

청 구 인      친모의 이름(친모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

피청구인      친부의 이름(친부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

사건본인      자녀의 이름(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

##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각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1. 피청구인은....(피청구인의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히 기재)

##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sup>5)</sup>
1. 소갑 제2호증
1. 소갑 제3호증

실질적인 증거자료<sup>6)</sup>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 청 구 원 인

1. 위 증거자료
1. 청구서 사본
1. 납부서

각 1통  
1통

2000년. 0 월. 0 일.

위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00지방법원 귀중

5) 증거를 제출하게 될 경우 붙게 되는 '증거번호'

6) 구체적으로 양육권자가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의 명칭. 사진을 제출하면 '사진'이라고 쓰고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제목,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기재함.



## 면접교섭권배제심판청구

청 구 인      친모의 이름(친모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

상대방      친부의 이름(친부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

사건본인      자녀의 이름(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

###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1. 상대방은.....(면접교섭권이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sup>5)</sup>
1. 소갑 제2호증
1. 소갑 제3호증

실질적인 증거자료<sup>6)</sup>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 청 구 원 인

1. 위 증거자료
1. 청구서 사본
1. 납부서

각 1통  
1통

2000년 . 0 월 . 0 일 .

위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00지방법원 귀중

5) 증거를 제출하게 될 경우 붙게 되는 '증거번호'

6) 구체적으로 양육권자가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의 명칭. 사진을 제출하면 '사진'이라고 쓰고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제목,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기재함.



## 양육비심판청구서

|       |                                         |
|-------|-----------------------------------------|
| 청 구 인 | 친모의 이름(친모의 주민등록번호)<br>등록기준지<br>주소<br>전화 |
| 상대방   | 친부의 이름(친부의 주민등록번호)<br>등록기준지<br>주소<br>전화 |
| 사건본인  | 자녀의 이름(자녀의 주민등록번호)<br>등록기준지<br>주소<br>전화 |

## 청 구 취 지

### ▶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년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 과거 양육비+장래 양육비 청구 함께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 (심판청구서 부분 송달 다음날 또는 심판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 과거 양육비만 청구하는 경우

1.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청 구 원 인**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                                      |      |
|--------------------------------------|------|
|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 각 1통 |
| 1.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 각 1통 |
|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 각 1통 |
| 1. 양육비 지출 및 소득자료 등                   | 1부   |
| 1. 청구서 부분                            | 1부   |

20 . . . . .

청구인 : 친모의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친모의 이름(친모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

상대방      친부의 이름(친부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

사건본인      자녀의 이름(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

##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년    월    일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금      원의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일 기재가 없으면 제적등본 제출)1통
1.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자녀(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0 . . . .

위 청구인 **엄마의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친모의 이름(친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채무자      친부의 이름(친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친부의 회사이름  
 주소  
 대표자 대표이사 ○○○  
 전화

##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_\_\_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청구채권 및 그 금액: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와 같음

## 신 청 이 유

1. (언제부터 얼마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 2회 이상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 구체적으로 기재)

## 첨 부 서 류

- |                                               |    |
|-----------------------------------------------|----|
| 1. 집행력 있는 정본                                  | 1통 |
| 2. 송달(확정)증명서                                  | 1통 |
| 3. 채무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 1통 |
| 4.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격증명서류(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1통 |    |

20 . . .

신청인(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청구채권목록

(집행권원 : \_\_\_\_\_ 법원 \_\_\_\_\_ 호 사건  
 )에 표시된 정기금 양육비채권 중 아래 금원 및 집행비용

#### 1. 정기금 양육비채권

- (1) 미성년자 ( . . . 생)에 대한 양육비 : 20 . . . 부터 20 . . . 까지 월 원씩 매월  
일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이 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  
래하는 양육비
- (2) 미성년자 ( . . . 생)에 대한 양육비 : 20 . . . 부터 20 . . . 까지 월 원씩 매월  
일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이 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  
래하는 양육비

2. 집행비용 : 금 원
- |               |       |
|---------------|-------|
| 신청수수료 2,000원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비용 | 원     |
| 송달비용          | 원     |
| 자격증명서교부수수료    | 원     |
| 송달증명서신청수수료    | 원 -끝- |

〈별지2〉

### 압류채권목록

양육비채무자( **친부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채권으로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1의 (1) 및 (2)의 금액에 대하여는 그 정기금 양육비의 지급기가 도래한 후에 지급기(급여지급일)가 도래하는 다음의 채권에 한함

### 다 음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매월 수령하는 급여(본봉 및 제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li> <li>2.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li> </ol> <p>※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p> |
|----------------------------------------------------------------------------------------------------------------------------------------------------------------------------------------------------------------------------------------------------------------------------------------|

**이행명령 신청서**

(금전지급 등 재산상 의무 불이행)

사건번호 : (양육비에 관한 판결문의 사건번호 기재)

신청인 성명 : 친모의 이름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피신청인 성명 : 친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미성년자인 자녀 성명 :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청 취지**

1. 피신청인은 \_\_\_\_ 법원 \_\_\_\_ 사건의 확정판결(확정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_\_\_\_ . \_\_\_\_ .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_\_\_\_ 원을 \_\_\_\_ 회 분할하여 \_\_\_\_ . \_\_\_\_ .부터 \_\_\_\_ . \_\_\_\_ .까지 매월 말일에 각 \_\_\_\_ 원씩을 지급하라(반드시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첨 부 서 류

- |                                       |    |
|---------------------------------------|----|
| 1.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정본 또는 사본          | 1부 |
| 1. 확정증명원(판결일 경우) 또는 송달증명원(조정조서 등의 경우) | 1부 |
| 1.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 1부 |
| 1.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 1부 |
| [사건본인이 성년인 경우 피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첨부]     | 1부 |
| 1. 신청서 부분                             | 1부 |

20 . . .

신청인 : **엄마의 이름**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과태료 신청서

대상사건번호 (양육비에 관한 판결문의 사건번호 기재)

신청인 성명 : 친모의 이름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 장소 :

피신청인 성명 : 친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위 당사자간 ○○가정법원 (이행명령을 받은 사건번호 기재) \_\_\_\_\_ 호 사건의 이행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감치, 과태료)에 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 이유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첨부서류

1. 이행명령 등 정본 또는 사본

1통

1. 신청서 부분

1부

20 . . . . .

신청인 : 친모의 이름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양육비이행확보제도-양식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
| 성명   | 친모의 이름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친 모 의 주 소 |      |  | 전화번호 1 |  |
|      |           |      |  | 전화번호 2 |  |

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

| 양육비<br>긴급지원<br>대상자 | 가구주와의<br>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동거<br>여부 | 건강상태<br>(장애·질병) | 비고 |
|--------------------|-------------|------|--------|----------|-----------------|----|
|                    | 자           | 자녀이름 | 자녀주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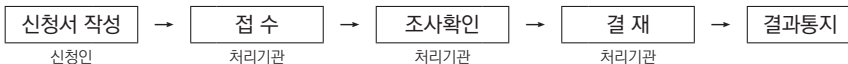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친모의 이름 (서명 또는 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

|      |                                                                                                          |           |
|------|----------------------------------------------------------------------------------------------------------|-----------|
|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통</li> <li>-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등.</li> </ul> | 수수료<br>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연장신청서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친모의 이름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1 |  |
|     | 주 소 | 친 모 의 주 소 |      |  | 전화번호 2 |  |
|     |     |           |      |  | 전자우편   |  |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연장 사유(해당 사항에 ☒ 체크해 주세요)

-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 기타 사유 :

|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 가주주(또는신청인)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가주주(또는신청인)와의동거 여부 | 건강상태(장애·질병) | 비고 |
|--------------|-----------------|------|------|-------------------|-------------|----|
|              | 자               | 자녀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신청인 친모의 이름 (서명 또는 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

|      |                                                                                                                                                                                     |
|------|-------------------------------------------------------------------------------------------------------------------------------------------------------------------------------------|
|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1통</li> <li>-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통(한부모가족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함)</li> <li>-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li> <li>- 주민등록등본 1통</li> </ul> |
|------|-------------------------------------------------------------------------------------------------------------------------------------------------------------------------------------|

## 처 리 절 차





상속-양식1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인자: 5,000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청구인수  
× 우편료 × 6

##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_\_\_\_\_ - \_\_\_\_\_  
주 소: 자녀의 주소  
송달장소: 법원의 우편물을 배송 받을 주소 (전화번호: \_\_\_\_\_)
- 성 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주 소: \_\_\_\_\_  
송달장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성 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 \_\_\_\_\_  
주 소: \_\_\_\_\_  
송달장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청구인 자녀의 이름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모 친모의 이름  
(전화번호: \_\_\_\_\_)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사망한 친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_\_\_\_\_ - \_\_\_\_\_  
사 망 일 자: 20 . . . . .  
최 후 주 소: 사망한 친부의 마지막 주소지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사망한 친부 이름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첨 부 서 류

### [1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사망한 친부 이름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르는 것입니다.

### [차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사망한 친부 이름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전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20 .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르는 것입니다.

##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20 . . . .

위 청구인 1. 자녀의 이름 ㉠ (인감 날인)

2. ㉠ (인감 날인)

3. ㉠ (인감 날인)

청구인 자녀의 이름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인감 날인)

모 친모의 이름 ㉠ (인감 날인)

○○법원 귀중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청 구 인(상속인)

1. 성 명 :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_\_\_\_\_ -  
 주 소 : 자녀의 주소  
 송달장소 : 법원의 우편물을 배송 받을 주소 (전화번호: \_\_\_\_\_)
2. 성 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주 소 : \_\_\_\_\_  
 송달장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청구인 자녀의 이름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모 친모의 이름  
 (전화번호: \_\_\_\_\_)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사망한 친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_\_\_\_\_ -  
 사망 일 자 : 20 . . . . .  
 최 후 주 소 : 사망한 친부의 마지막 주소지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사망한 친부의 이름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일반한정승인 - 3개월 이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르는 것입니다.

### [특별한정승인 - 3개월 이후]

청구인들은 20 . . .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처음에는 청구인들의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20 . . .에 채권자의 변제청구(채무승계 안내문 등)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6. 상속재산 목록 1부

20 . . . . .

위 청구인 1. 자녀의 이름      ㉞ (인감 날인)

2.                                      ㉞ (인감 날인)

3.                                      ㉞ (인감 날인)

청구인 자녀의 이름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㉞ (인감 날인)

모 친모의 이름      ㉞ (인감 날인)

○○법원 귀중

※ 해당란에 체크 ☒한 후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 목록

□ 부동산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1. 서울시 ○○구 ○○로1 대지 500㎡ 시가 2억원
2. 위의 지상 3층 건물 시가 8억원
3. 서울시 ○○구 관악로2 ○○아파트 ○동 ○호 (전용면적 99㎡) 시가 3억원

□ 금전채권(예금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 금융기관 등<br>(은행, 임대인 등) | 채권의 종류<br>(예금, 대여금 등) | 채권액        | 비 고 |
|-----------------------|-----------------------|------------|-----|
| ○○은행                  | 보통예금                  | 200,000원   |     |
| 김○○                   | 대여금                   | 3,000,000원 |     |
|                       |                       | 원          |     |

□ 자동차·중기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등록번호 : 서울 20가1234 차종(종류) : 현대 그랜저 ( 2005 년식) 시가 300만원

□ 유체동산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  |
|--|
|  |
|--|

## 2. 소극재산(피상속인의 채무)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 채권자<br>(은행, 카드사, 세무서 등) | 채무의 종류<br>(대출금, 카드대금 등) | 채무액        | 비 고 |
|-------------------------|-------------------------|------------|-----|
| ○○카드                    | 신용카드대금                  | 256,000원   |     |
| ○○은행                    | 대출금                     | 1,000,000원 |     |
| ○○세무서                   | 부가가치세                   | 310,450원   |     |
| ○○구청                    | 재산세 및 주민세               | 1,250,000원 |     |

## 3. 기타

|  |
|--|
|  |
|--|

#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X〉

## 부록 II

- 미혼모·부 관련  
지원 서비스





## X 지원서비스 및 지원단체

### 1 권역별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사업 - 미혼모·부 초기지원 서비스

- 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함
- 미혼모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녀 출산과 양육 시 응급 지원 서비스 제공

| 구분                                              |              | 세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대상                                            |              |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자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절차                                            |              | <div><div>① 거점기관<br/>담당자 상담</div>→<div>② 사례회의</div>→<div>③ 대상자 선정</div><div>↓</div><div>서비스지원</div></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br>원<br>내<br>용                                | 정서지원         | - 온·오프라인 상담(미혼모·부 부모상담, 정서지원, 생활 정보 상담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산 및<br>양육지원 | - 대상: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br>〈 2020년 기준 중위소득 72% 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 rowspan="2">가구원수</th><th rowspan="2">기준중위소득<br/>72%</th><th colspan="3">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th></tr><tr><th>직장</th><th>지역</th><th>혼합</th></tr><tr><td>2인</td><td>2,154,000</td><td>72,163</td><td>31,541</td><td>72,946</td></tr><tr><td>3인</td><td>2,787,000</td><td>93,220</td><td>72,646</td><td>93,692</td></tr><tr><td>4인</td><td>3,419,000</td><td>115,347</td><td>107,524</td><td>116,578</td></tr><tr><td>5인</td><td>4,052,000</td><td>135,661</td><td>129,921</td><td>137,309</td></tr></table>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br>7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2,154,000 | 72,163 | 31,541 | 72,946 | 3인 | 2,787,000 | 93,220 | 72,646 | 93,692 | 4인 | 3,419,000 | 115,347 | 107,524 | 116,578 | 5인 | 4,052,000 | 135,661 | 129,921 | 137,309 |
|                                                 |              | 가구원수                                                                                                                                                                                                                                                                                                                                                                                                                                                                                                             |           |               | 기준중위소득<br>7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장        | 지역            |               | 혼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인                                                                                                                                                                                                                                                                                                                                                                                                                                                                                                               | 2,154,000 | 72,163        | 31,541        | 72,946      |  |    |    |    |    |           |        |        |        |    |           |        |        |        |    |           |         |         |         |    |           |         |         |         |
| 3인                                              | 2,787,000    | 93,220                                                                                                                                                                                                                                                                                                                                                                                                                                                                                                           | 72,646    | 93,69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인                                              | 3,419,000    | 115,347                                                                                                                                                                                                                                                                                                                                                                                                                                                                                                          | 107,524   | 116,5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인                                              | 4,052,000    | 135,661                                                                                                                                                                                                                                                                                                                                                                                                                                                                                                          | 129,921   | 137,3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 병원비, 자녀양육 생필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액: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140만원 지원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육용품의 경우 1회 10만원 이하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가 12개월 이하인 경우, 범위 내에서 연간 30만원 한도 내 추가 지원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세부내용                                                                                                                  |
|----------|--------------------|-----------------------------------------------------------------------------------------------------------------------|
| 지원<br>내용 | 친자 검사비 지원          |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실비지원)                                                                                 |
|          |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 -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br>- 예시: 산전후 관리교육, 부모교육, 경제 및 법률 교육, 자녀와 놀이활동 |
|          | 자조모임 운영지원          | - 자립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br>- 1인당 지원한도액 2만원 이내, 모임 1회당 30만원 이내                                                  |
|          | 지역 유관기관 연계지원       | - 온·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br>- 미혼모·부 가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복지 서비스 수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

• 사업수행기관: 전국 17개소

| 시도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서울 | 서울특별시<br>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 02-861-3020   |
| 서울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 서울 마포구 백범로1길 4        | 02-704-4750   |
| 부산 |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 부산 서구 감천로 229         | 051-253-5235  |
| 대구 | 대구서구건강가정<br>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구 서구 서대구로 330, 5~6층  | 053-355-8042  |
| 인천 | 인천서구건강가정<br>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인천 서구 경명대로 693번길6     | 032-569-1546  |
| 광주 | 광주남구건강가정<br>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광주 동구 남문로 693번길 14    | 062-234-6053  |
| 대전 |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대전 유성구 테크노 6로 40-17   | 042-932-9934  |
| 울산 | 물푸레 복지재단              | 울산 중구 성안10길 16        | 052-903-9200  |
| 경기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총장로 432    | 031-501-0033  |
| 강원 | 재단법인 착한목자수녀회          | 강원도 춘천시 스무숲2길 16-3    | 033-262-4617  |
| 충북 | 청주새생명지원센터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135-35 | 070-7725-6905 |

| 시도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충남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 070-7733-8318 |
| 전북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 063-231-0386  |
| 전남 | 여수시건강가정<br>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69-1            | 061-659-4171  |
| 경북 | 칠곡군건강가정<br>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 54           | 070-4333-5976 |
| 경남 |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 070-4334-5335 |
| 제주 |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제주 제주시 중앙로 14길15             | 064-725-7015  |

##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및 지원 내용

| 시설 유형               | 입소대상       | 지원내용                                                                                          | 입소<br>기간   |
|---------------------|------------|-----------------------------------------------------------------------------------------------|------------|
| 모(부)자<br>가족<br>복지시설 | 기본<br>생활지원 |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br>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br>모(부)자가족                                                    | 3년<br>(2년) |
|                     | 자립<br>생활지원 |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br>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br>모(부)자가족<br>-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br>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 미<br>흡한 세대 우선 입소 |            |
|                     | 공동<br>생활지원 |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br>려운 모 부자가족으로서<br>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br>을 이뤘 생활하면서 자립<br>을 준비하는 자                   | 2년<br>(1년) |

| 시설 유형              |                      | 입소대상                                                                                                                                                        | 지원내용                                                                                                                                                                                                                                                                                                       | 입소<br>기간     |
|--------------------|----------------------|-------------------------------------------------------------------------------------------------------------------------------------------------------------|------------------------------------------------------------------------------------------------------------------------------------------------------------------------------------------------------------------------------------------------------------------------------------------------------------|--------------|
| 미혼모자<br>가족<br>복지시설 | 기본<br>생활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 (6개월미만)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li> <li>-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 무소 입소여성, 소득기준 초과자(정원의 10%범위 내), 가정폭력피해여성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식 무료제공</li> <li>- 분만의료 혜택</li> <li>- 자립지원(직업교육, 교양교육, 가사교육, 상담지도 등)</li> <li>- 기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li> </ul>                                                                                                                                    | 1년<br>(6개월)  |
|                    | 공동<br>생활지원<br>(미혼모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 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li> <li>- 숙식 무료제공</li> <li>- 자립 프로그램 실시 (직업교육, 교양교육, 가사교육 등)</li> <li>- 기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li> </ul>                                                                                                                        | 2년<br>(1년)   |
|                    | 공동<br>생활지원<br>(미혼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로서 일정 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li> <li>- 숙식 무료제공</li> <li>- 자립 프로그램 실시 (직업교육, 교양교육, 가사교육 등)</li> <li>- 기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li> </ul>                                                                                                                        | 2년<br>(6개월)  |
| 일시지원<br>복지시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부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모와 아동</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식 무료제공, 생활보조금 지원</li> <li>- 의료혜택(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li> <li>- 법률상담, 심리상담</li> <li>- 자녀의 방과 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li> <li>- 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li> <li>- 법률상담, 심리상담</li> <li>- 퇴소 후 자립을 위해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li> <li>- 기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li> </ul> | 6개월<br>(6개월) |

### 3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 시설유형                       |                             | 시설명    | 주소                              | 전화번호          |
|----------------------------|-----------------------------|--------|---------------------------------|---------------|
| 모자<br>가족<br>복지<br>시설       | 기본생활<br>지원형(6)              | 동광모자원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23-1<br>(중계동)      | 02-930-5782   |
|                            |                             | 성심모자원  |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12길 11-3            | 02-712-5287   |
|                            |                             | 영락모자원  |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5길 47<br>(정릉3동)      | 02-941-1970   |
|                            |                             | 창신모자원  |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 8나길 28              | 02-2612-7142  |
|                            |                             | 평화모자원  | 서울시 구로구 안양천로<br>539길 18         | 02-2614-4303  |
|                            |                             | 해오름빌   |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26길 21-3             | 02-754-5702   |
| 부자<br>가족<br>복지<br>시설       | 기본생활<br>지원형(1)              | 선재누리   |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 4길 21               | 02-6959-6858  |
|                            | 공동생활<br>지원형(1)              | 구세군한아름 |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8길 36-5             | 02-2691-8445  |
| 미혼<br>모자<br>가족<br>복지<br>시설 | 기본생활<br>지원형(6)              | 구세군두리흙 |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41              | 02-363-5722   |
|                            |                             | 마음자리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53나길 53              | 02-2691-4365  |
|                            |                             | 애란원    | 서울시 서대문구<br>연대동문길 138 (대신동)     | 02-393-4723   |
|                            |                             | 마포애란원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4나길 5                | 02-711-4725   |
|                            |                             | 도담하우스  | 서울시 송파구<br>성내천로 23가길 6-4        | 02-449-8893   |
|                            |                             | 바인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br>양평로12가길 8, 501호     | 02-2671-0693  |
|                            | 미혼모자<br>공동생활<br>지원형<br>(11) | 애란영스빌  |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br>20길 44-13, 303호 | 02-333-4725   |
|                            |                             | 구세군디딤돌 | 서울시 종로구 평창12길 8-18              | 070-7547-8895 |
|                            |                             | 달빛동지   | 서울시 성북구<br>오패산로17길 24-13        | 02-912-1616   |
|                            |                             | 꿈나무    |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245<br>다솜빌라 4~5층     | 070-8955-0804 |
|                            |                             | 두리마을   |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41              | 02-313-3370   |

| 시설유형                       |                             | 시설명                           | 주소                            | 전화번호         |
|----------------------------|-----------------------------|-------------------------------|-------------------------------|--------------|
| 미혼<br>모자<br>가족<br>복지<br>시설 | 미혼모자<br>공동생활<br>지원형<br>(11) | 애란모자의집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4길9-7             | 02-391-4725  |
|                            |                             | 마포클로버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35-4             | 02-322-3325  |
|                            |                             | 열린집                           | 서울시 금천구<br>금하로 714-20 602호    | 02-563-7420  |
|                            |                             | 아름뜰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길 32-3<br>(서교동)   | 02-334-4614  |
|                            |                             | 생명누리의집                        | 서울시 은평구<br>서오릉로25가길 3-21, 3층  | 02-326-5891  |
|                            |                             | 한남하우스                         | 서울시 강서구<br>방화대로6가길 34, 302호   | 02-2661-8808 |
|                            | 미혼모<br>공동생활<br>지원형(1)       | 애란세움터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7길 61-22         | 02-703-4406  |
| 일시지원 복지시설<br>(1)           |                             | 서울모자의집                        | 서울시 구로구                       | 02-2612-6736 |
| 한부모가족<br>복지상담소(3)          |                             | 나,너,우리<br>한가족센터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1길 4 2층            | 02-363-4750  |
|                            |                             | 이주배경 한부<br>모가족상담소             | 서울시 양천구<br>월정로48길 15-2, 1, 2층 | 02-792-7937  |
|                            |                             | 한국미혼모지원<br>네트워크부설<br>한부모가족상담소 | 서울시 마포구<br>잔다리로3안길 10, 101호   | 02-322-5007  |

## 4 미혼·한부모 상담 민간단체

| 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
| 변화된미래를만드는<br>미혼모협회 인트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0길 15-6                    | 02)827-0032              |
| 한국미혼모지원<br>네트워크        |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2길 41, 301호<br>(성산동, 유니온빌딩)  | 02)734-3007              |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맛로46 3, 4층                   | 02-2693-5007             |
| 마혼모협회 아이맘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로5길 17길 진성빌딩 3층              | 053)762-5573             |
| 한국한부모연합                | 서울시 동작구 알마타길 13-13<br>(대방동 344-4)       | 1811-9925<br>02)826-9925 |
| 부산한부모가족센터              | 부산시 동래구 총렬대로 211 5층 501호<br>(명륜동)       | 051)866-4238             |
| 울산한부모가족<br>자립센터        | 울산시 남구 신정로 91 4층                        | 052)271-1103             |
| (사)대전여민회               | 대전시 중구 동서대로1332번길 9-3                   | 042)257-3534             |
| (사)강원더불어이웃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86-1, 3층                    | 033)255-9582             |
| (사)천안여성의 전화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871번지 2층                    | 041)561-0306             |
| 서울한부모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br>서울여성프라자 305호    | 02-815-1563              |
| (사)안산여성노동자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1길 21,<br>보령1차연립 4동 101호 | 031-494-4362             |
| (사)한부모가족회한가지           |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316번길 8, 3층                 | 032-525-5188             |

## 5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이행관리원)

| 구분       |                | 세부내용                                                                                                                             |
|----------|----------------|----------------------------------------------------------------------------------------------------------------------------------|
| 지원대상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 지원<br>내용 | 양육비이행관리원<br>역할 | -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협의, 법률, 추심, 면접교섭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br>- 양육비 상담지원 → 합의지원 → 소송지원 → 이행지원 → 이행 모니터링 등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
|          | 법률지원           | - 양육비 인지청구: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에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br>-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br>- 양육비 변경청구: 양육비 판결을 받았으나 증액을 희망하는 경우                   |
|          | 추심지원           | -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br>※ 추심지원: 양육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 안내내용           | - 아동 양육비 신청 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내용 및 신청절차 안내<br>→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서비스 신청서 교부                                                  |
| 신청방법     |                | - 신청서류 및 추가 서류 등기우편 혹은 방문 제출<br>(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우(06578)에 등기우편 혹은 방문제출                                   |
| 문의       |                |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br>- 전화상담: 1644-6621                                                                            |

# 2020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구분    | 복지서비스                       | 대상 및 내용                                                                                                                                                       | 신청문의                                                                                                                                             |
|-------|-----------------------------|---------------------------------------------------------------------------------------------------------------------------------------------------------------|--------------------------------------------------------------------------------------------------------------------------------------------------|
| 임신·출산 | 임산·출산·진료비 지원<br>(국민행복카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 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신부 100만원)</li> <li>청소년 산모(만 18세 이하) 120만원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li> <li>건강보험공단 ☎ 1577-1000</li> <li>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li> </ul>               |
|       | 산모건강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전혈액검사, 철분제/임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등</li> </ul>                                                                           |                                                                                                                                                  |
|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신부에게 급여·비급여 일부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li> </ul>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한산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li> <li>건강관리사 파견(바우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li> </ul>                                                                                |
|       | 출산비용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생활수급자·건강복지지원대상자) 자녀 1인당 70만원</li> <li>(1~6급 여성장애인) 자녀 1인당 100만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센터 /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부서</li> <li>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li> </ul>                                                |
|       | 미혼모자 사설(기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신부 및 출산후(6개월 미만)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시설 및 지자체</li> <li>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li> <li>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li> </ul>                   |
| 양육·돌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위소득 52% 이하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li> <li>아동양육비(월 20만원)·추가 아동양육비·학용품비·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증명서(중위소득 6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센터</li> <li>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li> <li>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li> </ul>                          |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li> <li>아동양육비(월 35만원)·검정고시 학습비·고교생 교육비·자립지원축진수당·한부모가족 증명서(중위소득 72%)</li> </ul>         |                                                                                                                                                  |
|       | 건강복지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갑작스러운 위기사유(이혼, 실직, 질병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센터 /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li> <li>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li> </ul>                                                  |
|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 지원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및 시·군·구 환경업무 부서</li> <li>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813, 1819</li> </ul>                                    |
|       | 미혼모부자 초기지원(거점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양육지원, 전차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li> </ul>                                                                            |
|       |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li> <li>주거급여 상담센터 ☎ 1600-0777</li> </ul>                                          |
|       | 가족역량강화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등에게 사례관리,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등 제공 및 서비스 연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가정지원센터 고객센터 ☎ 1577-9337</li> <li>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li> </ul>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 없음) 대상 급여·비급여 일부 지원</li> </ul>                                               |                                                                                                                                                  |
|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음)에게 검사비 지원</li> <li>만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자 대상 의료비 등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li> </ul>                                                                          |
|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음) 대상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li> </ul>                                                          |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li> <li>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바우처)</li> </ul>                                   |                                                                                                                                                  |
|       | 아동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84개월 간 월 10만원 지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소 및 주민센터</li> <li>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li> <li>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li> </ul>                        |
|       | 유아학비 지원<br>(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대상 유아학비·보육료·방과후과정 비용 지원</li> </ul>                                                             |                                                                                                                                                  |
|       | 보육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바우처)</li> </ul>                                                                          |                                                                                                                                                  |
|       | 가정양육수당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양육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월 10-20만원의 수당 현금 지급</li> </ul>                                                                        |                                                                                                                                                  |
|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산부와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서비스 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li> <li>아동권리보장원 ☎ 02-6283-0266, 누리집(www.dreamstart.go.kr)</li> </ul>              |
|       | 아이돌봄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금액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li> <li>소득구별별 정부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센터</li> <li>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 ☎ 1577-2514, 누리집(idolbom.go.kr)</li> <li>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li> </ul> |
|       | 지역아동센터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보호, 교육기능, 정서지원, 문화서비스, 지역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li> </ul>                                                                                |
|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센터 / 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li> <li>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li> </ul>                                 |
|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생활고 등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바우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li> </ul>                                                                         |
|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보건·교육 등 연계·제공하여 탈빈곤 및 자활 지원</li> </ul>                                                                              |                                                                                                                                                  |
|       | 육아종합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프로그램 운영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종합지원센터 고객센터 ☎ 1577-0756, 누리집(central.childcare.go.kr)</li> <li>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li> </ul>               |
|       | 공동육아나눔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이웃과 함께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프로그램 운영, 돌봄돌보이 지원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가정지원센터 고객센터 ☎ 1577-9337, 누리집(www.familynet.or.kr)</li> </ul>                                            |
|       | 초등돌봄교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활동 프로그램, 숙제·도서·휴식 등 개인 활동, 급·간식 지원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학(인학 예정) 초등학교</li> <li>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li> </ul>                                               |

| 구분    | 복지서비스                | 대상 및 내용                                                                      | 신청문의                                                                                |
|-------|----------------------|------------------------------------------------------------------------------|-------------------------------------------------------------------------------------|
| 시설·주거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등                                | • 시·군·구청<br>•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지원                                               |                                                                                     |
|       | 공공주택 지원              | • 주택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br>• 영구임대, 매입·전세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 • 시·군·구청 / 각 시·도 도시공사<br>•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누리집(www.lh.or.kr)                  |
| 교육·취업 |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 •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대상 위탁 교육 지원                                            | • 해당기관, 시·도 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br>•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br>•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       | 여성세일화하기센터            | •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 등 지원                                                | • 세로일화기센터 상담전화 ☎ 1544-1199,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saeil.mogef.go.kr)                     |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학년~중등3학년) 대상 급식, 보충학습, 상담, 체험활동 등 운영                    | • 주민센터 / 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www.youth.go.kr/yaca/index.do)<b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02-330-2831-4 |
|       | 자녀 교육비 지원            |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 • 주민센터 / 복지포 누리집(www.bokjiro.go.kr)<br>• 교육비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18세) 대상 상담·치료, 보호, 교육, 자립지도 등 지원                    |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031-333-1900, 누리집(www.nyhc.or.kr)                                   |
|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 • 대학 재학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지원<br>•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누리집(www.kosaf.go.kr)                                          |
|       | 취업성공패키지              | • 만 18~69세 이하 한부모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능력증진, 취업알선 등 프로그램 제공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1350                                                                 |
|       |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6개월은 80%, 7개월부터는 50% 지급                               |                                                                                     |
| 금융·법률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 • 양육비이행관리원<br>•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 반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소송비용 등 지원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       | 근로장려금                | •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홀벌이 가구 등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 • 매년 5월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앱 및 ARS ☎ 1544-9944                                     |
|       | 자녀장려금                | •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지급                              |                                                                                     |
|       | 소액보험                 | • 차상위 한부모·조손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양자 등<br>• 보험계약(저소득층 아동보험 등) 체결 및 보험료 전액 지원    | • 서민금융통화콜센터 ☎ 1397<br>•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ra.or.kr)                               |
|       | 미소금융                 | •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 저금리로 대출                                            |                                                                                     |
|       | 청소년한부모적금             | • 요간에 해당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주 대상 1년치 이자분 추가 지급                                       |                                                                                     |
|       | 희망키움통장(I, II)        | •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                                                                                     |
|       | 청년희망키움통장             |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이 꾸준히 근로하여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용                        |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 기타    | 청년저축계좌               |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                                                                                     |
|       | 내일키움통장               | •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참여하면서 매월 일정금액 저축 시 장려금, 수익금 지원                             | • 자활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지원       | • 출생신고 과정 지원<br>• 친자감사비 지원(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br>•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       | 스포츠 강좌 이용권           | • 만 5~18세 유·청소년<br>•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 02-410-1298-9, 누리집(svoucher.kspo.or.kr)                           |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br>•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9만원) | • 주민센터<br>• 문화누리카드 ☎ 1544-3412, 누리집(www.mnuri.kr)                                   |
|       | 4대강·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 •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 시 4대강(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 • 문화재청 궁능서비스기획과 ☎ 02-6450-3837                                                      |
|       | 서민환 가스시설 개선          | • LPG 가스시설 교체, 타이머류 등 안전장치 보급지원 등                                            | • 주민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
|       | 요금감면                 | 간강보험료 경감                                                                     |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       |                      | 복지용 쌀 할인 지원(기준가격의 60~92% 할인)                                                 | • 주민센터                                                                              |
|       |                      |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 • 주민센터 /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br>• (전기) 한국전력공사 ☎ 123<br>(가스) 해당 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        |
|       |                      | 에너지바우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       |                      | 이동통신요금 감면                                                                    | • 주민센터 / 각 해당 이동통신사 대리점<br>• 복지할인 전용 ARS ☎ 1523, 고객센터 ☎ 114                         |
|       |                      | 과태료 50% 이내 감경                                                                | •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
|       |                      | 자동차차임수수료 감면(기초생활수급자 면제, 한부모가족 80% 감면)                                        | •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 1577-0990                                                            |
|       |                      | 수도요금 감면                                                                      |                                                                                     |
|       |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 주민센터<br>•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br>•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





#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